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 토 보 고

▣ 남인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5623호)

2026. 3.

##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 목 차

Ⅰ. 개요 ····· 1

Ⅱ. 주요 내용별 검토 ····· 5

1. 공공 장기요양기관 확충 등 ····· 5

2. 장기요양요원의 권익 보호 ····· 21

3.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 46

4.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관리 강화 등 ····· 71

# Ⅰ. 개요

## 1. 남인순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5623호)

###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남인순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5. 12. 24.

(3) 회 부 일 : 2025. 12. 26.

### 나. 제안이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2008년 첫 시행된 이래 노인의 노후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여 왔고, 향후 급격한 노인인구 증가로 인하여 장기요양서비스 수요 또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측됨. 이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의 핵심 인력인 장기요양요원의 안정적인 수급이 제도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임.

그런데 그간 장기요양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설립 요건을 완화하여 민간 기관의 진입을 장려한 결과, 서비스의 질적 저하, 열악한 근로 환경, 공공성 약화 등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특히 낮은 임금 수준, 과도한 업무 부담, 불안정한 고용 등 장기요양요원의 전반적인 근로조건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제기되어 왔음.

또한, 인건비와 운영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현행 구조에서는 비용이 부적절하게 집행될 소지가 있으며, 장기요양요원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성폭력 등 인권침해 사례 역시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해결책이 미비한 실정임.

이에 장기요양기관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장기요양요원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하여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임.

## 다. 주요내용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공공성·전문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도록 함(안 제4조제8항 신설).

(2) 지방자치단체별 장기요양급여 수요 및 제공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6조의2제1항제6호 신설).

(3)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구역에 공공 장기요양기관을 설치·운영하도록 함(안 제6조의3 신설).

(4)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구역 장기요양기관을 관리·지원하기 위하여 거점지역 장기요양기관을 설치·운영하도록 함(안 제6조의4 신설).

(5) 공단이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22조의2 신설).

(6) 수급자 및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괴롭힘·폭언·폭행·상해 또는 성희롱·성폭력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안 제28조의2제2항 신설).

(7)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을 6년에서 4년으로 변경함(안 제32조의3).

(8)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교육을 거부한 경우, 수급자 또는 장기요양기관이 급여 외 행위를 요구하거나 제공한 경우 또는 수급자 및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괴롭힘·폭언·폭행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

(9)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수급자와 그 가족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35조의3).

(10)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괴롭힘·폭언·폭행 등의 행위를 한 경우 둘 이상의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도록 함(안 제35조의4제7항 신설).

(11) 보건복지부장관이 장기요양요원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정하도록 하고 장기요양기관이 이를 준수하도록 함(안 제35조의6 신설).

(12) 공단은 급여비용의 심사 후 장기요양기관에 급여비용을 인건비와 운영비로 구분하여 통보하고 장기요양기관은 인건비와 운영비로 구분하여 지급하도록 함(안 제38조).

(13) 장기요양위원회 위원을 24인으로 늘리고, 장기요양요원을 대표하는 자를 포함하여 구성하도록 함(안 제46조).

(14) 장기요양지원센터의 업무에 성희롱·성폭력 등으로 인한 고충 상담 및 지원,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등을 추가함(안 제47조의2).

(15)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안전조치, 공공 장기요양기관 운영 지원, 사례관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공단이 관리하도록 함(안 제48조).

(16) 공단이 장기요양기관의 급여 제공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 고발이나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하도록 함(안 제54조제3항 신설).

(17) 공단이 장기요양사업을 관리하기 위하여 사례관리회의를 운영하도록 함(안 제54조의2 신설).

## Ⅱ. 주요 내용별 검토

### 1. 공공 장기요양기관 확충 등

####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정의 조항에서 장기요양기관을 공공 장기요양기관과 민간 장기요양기관으로 구분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안 제2조제4호 및 제4조제4항).

□ 또한, 장기요양기본계획에 장기요양급여 수요 전망에 대응하는 제공 계획과 공공 장기요양기관의 설치·운영 및 확충 계획을 포함하도록 하고, 실태조사 항목에 장기요양요원의 인력수급추계, 장기요양급여의 수요 전망, 지방자치단체별 장기요양급여의 수요 및 제공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6조제1항제4호·제5호 신설, 제6조의2제4호·제5호·제6호).

□ 아울러, 개정안은 시장·군수·구청장 등의 공공 장기요양기관 설치·운영을 의무화하고 그에 대한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규정하며, 지역특성에 맞는 장기요양사업의 표준 개발·보급, 관할구역 장기요양기관 간의 연계·협력·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거점지역 장기요양기관을 설치·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3 및 제6조의4 신설).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 4. “장기요양기관”이란 제31조에 따른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
| <신 설> | 가. 공공 장기요양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또는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시·도 사회서비스원이 설치 또는 운영하는 기관 |
| <신 설> | 나. 민간 장기요양기관: 공공 장기요양기관 이외의 기관 |
| 5. (생 략) | 5. (현행과 같음) |
|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① ~ ③ (생 략) |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
|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공공----------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
| ⑤ ~ ⑦ (생 략) | ⑤ ~ ⑦ (현행과 같음) |
| <신 설> | ⑧ (생 략) |
| 제6조(장기요양기본계획)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등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장기요양기본계획) ① ----------. |

| | |
|---|---|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 3. (생 략) | 3. (생 략) |
| <신 설> | 4. 제6조의2제1항제5호에 대응한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 |
| <신 설> | 5. 제6조의3에 따른 공공 장기요양기관의 설치·운영 및 확충 계획 |
| 4. (생 략) | 6. (현행 제4호와 같음)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제6조의2(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기요양사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 제6조의2(실태조사) ① ----------.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 4.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처우 및 규모에 관한 사항 | 4. ----------처우, 규모 및 인력수급추계---------- |
| <신 설> | 5. 장기요양급여의 수요전망에 관한 사항 |
| <신 설> | 6. 지방자치단체별 장기요양급여의 수요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 5. (생 략) | 7. (현행 제5호와 같음)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신 설> | 제6조의3(공공 장기요양기관의 설치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구역에 공공 장기요양기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br>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6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수요전망의 1000분의 30 이상을 공공 장기요양기관으 |

| | |
|---|---|
| | 로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br>③ 국가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공공 장기요양기관 설치·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br>④ 제2항에 따른 공공 장기요양기관 공급 비율의 산정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 <신 설> | 제6조의4(거점지역 장기요양기관의 설치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의 장기요양기관을 통합적으로 관리·지원하기 위하여 거점지역 장기요양기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br>② 거점지역 장기요양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br>1. 지역특성에 맞는 장기요양사업의 표준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br>2. 관할 구역 장기요양기관 간의 연계·협력·지원에 관한 사항<br>3. 제54조의3에 따른 지역사례관리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br>4.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br>③ 제1항에 따른 거점지역 장기요양기관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 시행일: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 나. 검토의견

### 1) 실태조사 사항 추가

□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2023~2027)[1]에서는 2027년 장기요양 수

1) 보건복지부,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2023~2027), 2023.8.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조(장기요양기본계획)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등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를 원

급자가 145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고, 약 75.5만명의 요양보호사가 필요하여 요양보호사 전망치(68.0만 명) 대비 약 7.5만명의 인력 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였음[2].

또한, 보건복지부에서 진행한 연구용역[3]에 따르면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는 106.2만명('23년 기준)에서 20년 뒤 262만명('43년 기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었고, 요양보호사 1명이 1.5~1.9명을 돌보는 현재의 수준('23년 기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20년 뒤 약 99만명('43년 기준)의 요양보호사가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었음.

이에 장기요양급여 수요 전망을 충족할 수 있는 인력 등의 공급을 위한 면밀한 정책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현행법 제6조의2[4]는 3년마다 장기요양인정에 관한 사항, 수급자의 규모 등에 관한 사항, 장기요양기관에 관한 사항과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처우·규모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

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연도별 장기요양급여 대상인원 및 재원조달 계획
2. 연도별 장기요양기관 및 장기요양전문인력 관리 방안
3. 장기요양요원의 처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노인등의 장기요양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따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참고로, 2025년 11월 말 기준으로, 장기요양 수급자는 약 123만명, 요양보호사는 약 66.4만명이고, 전체 장기요양요원은 약 80만명임.

3) 보건복지부(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 인구변화의 주요 부문별 전망과 대응 방향 연구, 2025.3. p.71~85

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조의2(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기요양사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1. 장기요양인정에 관한 사항
2. 제52조에 따른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이하 "등급판정위원회"라 한다)의 판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이하 "수급자"라 한다)의 규모, 그 급여의 수준 및 만족도에 관한 사항
3. 장기요양기관에 관한 사항
4.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처우 및 규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기요양사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은 늘어나는 장기요양급여 수요 대비 인력 부족 우려 등을 감안하여 그 실태조사 사항에 ① 장기요양요원의 인력수급 추계, ② 장기요양급여의 수요 전망, ③ 지방자치단체별 장기요양급여의 수요 및 제공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해당 사항들을 장기요양사업의 원활한 제공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다만, 실태조사는 일반적으로 사업 등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안 제6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요원의 인력수급"추계"나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수요"전망"에 관한 사항이 실태조사 사항으로 적합한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5], 실태조사가 아닌 별도의 전망 또는 추계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참고로, 「보건의료기본법」[6]은 보건의료에 관한 실태조사 근거와 별개로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

5) 다만, 일부 입법례에서는 다음과 같이 전망 등을 실태조사 사항에 포함하고 있는 경우도 있음.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실태조사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현황, 통계 및 실태 등을 조사하거나 작성할 수 있다.
2. 분야별·기능별 인력 현황 및 수요 전망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6조(분산에너지 실태조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분산에너지 활성화 수준을 파악하는 데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1. 분산에너지의 현황 및 전망

6) 「보건의료기본법」 제55조(보건의료 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보건의료 수요 및 이용 행태, 보건의료에 관한 인력·시설 및 물자 등 보건의료 실태에 관한 전국적인 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의료정책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 보건의료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3조의2(수급추계위원회) ① <u>보건의료인력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중장기 수급추계를 실시하고</u>, 그 결과를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다음 각 호의 직종별로 수급추계위원회(이하 "수급추계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
1.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치과의사·한의사
2. 「간호법」 제2조에 따른 간호사
3.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약사 및 한약사
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에 따른 의료기사
5.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건의료인력

### 2) 공공 장기요양기관 설치·운영 의무화

□ 현행법 제2조제4호[7]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복지법」 제31조[8]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9] 및 재가노인복지시설[10]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의미함.

- 현행법에서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설립·운영주체에 따른 별도의 구분은 하지 않고 있으나,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받기 위해

---

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장기요양기관"이란 제31조에 따른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1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 ①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가급여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4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 대상)** 법 제3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을 말한다.

8) **「노인복지법」 제31조(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노인주거복지시설
2. 노인의료복지시설
3. 노인여가복지시설
4. 재가노인복지시설
5. 노인보호전문기관
6. 제23조의2제1항제2호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
7. 제39조의19에 따른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9) **「노인복지법」 제34조(노인의료복지시설)** ①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노인요양시설 :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10) **「노인복지법」 제38조(재가노인복지시설)** ①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방문요양서비스 :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노인(이하 "재가노인"이라 한다)으로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에게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를 영위하도록 하는 서비스
2. 주·야간보호서비스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 동안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서비스
3. 단기보호서비스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보호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함으로써 노인 및 노인가정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서비스
4. 방문 목욕서비스 : 목욕장비를 갖추고 재가노인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서비스
5. 그 밖의 서비스 : 그 밖에 재가노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비스

제출하여야 하는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에서 설립형태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개인 등으로 구분하여 신청하도록 하고 있음.

□ 2025년 11월 말 기준으로 전체 장기요양기관 수(시설급여기관: 6,361개소, 재가급여기관: 20,831개소) 대비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운영 중인 장기요양기관 수의 비율을 살펴보면, 시설급여기관은 2.1%(135개소), 재가급여기관은 0.8%(193개소)에 불과한 실정임.

- 현재 국가가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은 없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은 현행법 제48조[11]에 따라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기준을 개발하고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서울요양원 1개소를 운영 중에 있음.

< 장기요양기관 설치·운영 현황 >

2025.11.30. 기준 (단위: 개소)

| 구분 | 전체 | 시설급여 | 재가급여 |
|---|---|---|---|
| 계 | 29,924 | 6,361 | 23,563 |
| 지자체 | 328 | 135 | 193 |
| 법인 | 3,946 | 1,407 | 2,539 |
| 개인 | 25,650 | 4,819 | 20,831 |

※ 주) 전국 지자체(행복e음)로부터 연계받은 자료로 장기요양기관은 지자체, 법인, 개인으로 구분됨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1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8조(관리운영기관 등) ① 장기요양사업의 관리운영기관은 공단으로 한다.
②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3.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기준을 개발하고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한 장기요양기관의 설치 및 운영
③ 공단은 제2항제13호의 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할 때 노인인구 및 지역특성 등을 고려한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고려하여야 하고, 설치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관련하여 2021년[12] 시설급여 기관 정기평가 결과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시설급여 기관의 A등급(38.5%), B등급(35.6%) 비율이 전체 시설급여 기관의 A등급(17.1%), B등급(27.2%) 비율에 비하여 높게 나타난바, 일반적으로 공공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의 질이 높을 것으로 보임.

< 설립주체별 시설급여 기관 정기평가 결과(2021년) >

'26. 2. 13.기준 (단위: 개소, %)

| 구분 |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 E등급 | 계 |
|---|---|---|---|---|---|---|
| 계 | 758(17.1) | 1,205(27.2) | 1,087(24.6) | 625(14.1) | 748(16.9) | 4,423(100) |
| 개인 | 376(12.2 | 795(25.8) | 813(26.4) | 515(16.7) | 586(19.0) | 3,085(100) |
| 법인 | 341(27.8) | 372(30.3) | 257(20.9) | 106(8.6) | 151(12.3) | 1,227(100) |
| 지방자치단체 | 40(38.5) | 37(35.6) | 16(15.4) | 3(2.9) | 8(7.7) | 104(100) |
| 기타 | 1(14.3) | 1(14.3) | 1(14.3) | 1(14.3) | 3(42.9) | 7(100) |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 자료 재구성

또한, 2022년 국가인권위원회는 노인돌봄체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이 차지하여야 하는 목표 비율을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이행계획을 수립할 것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권고한 바 있음.[13]

□ 이에 안 제6조의3은 시장·군수·구청장 등으로 하여금 공공 장기요양기관 설치·운영을 의무화하고, 장기요양급여 수요 전망의 100분의 30 이상을 공공 장기요양기관이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

12) 2021년 시설급여 기관 평가는 코로나19로 인해 2022년까지 연장 실시되었고, 평가 주기가 3년임에 따라 2025년 시설급여 기관 평가가 이루어졌으나 2026년 2월 현재 평가 결과는 아직 공개되지 않음.

13) 국가인권위원회, 노인돌봄 공공성 강화 및 노인돌봄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2022. 4. 20.

도록 함으로써 공공 장기요양기관 확충을 통해 장기요양급여의 공공성과 질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그 취지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 다만,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먼저, 앞서 살펴보았듯이 약 3만 개소에 이르는 장기요양기관의 약 99%를 민간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현재의 공급구조를 고려할 때, 안 제6조의3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수요전망의 30% 이상을 공공 장기요양기관이 공급하도록 하는 경우 기존에 수요를 담당하던 민간 장기요양기관의 입장에서는 경영상 부담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14].

□ 다음, 동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에서 지난 2024년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단이 공공 장기요양기관을 설치·운영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15]과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의 수가 그 지역 전체 장기요양기관 수의 100분의 30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는 법안[16]이 발의되어 심사된 바 있는데,

해당 법안들에 대한 심사 당시, 설립되어 운영 중인 장기요양기관의 정원충족률이 80% 미만이라는 점[17] 등을 감안하여 공공 장기

---

14) 참고로, 지난 2009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기관 직접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안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01808호 백성운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804407호 전혜숙의원 대표발의) 심사 당시 공단이 장기요양기관을 직접 설치하는 경우 그 주변의 민간이 설립한 장기요양기관의 반대가 우려된다는 의견, 공단의 장기요양기관 직접 설치 목적인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적정성 검토는 MOU 체결을 통해서도 가능하다는 의견 등이 제기되었고, 결과적으로 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하는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이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8조(관리운영기관 등)** ③ 공단은 제2항제13호의 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할 때 노인인구 및 지역특성 등을 고려한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고려하여야 하고, 설치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2366호, 진성준의원 대표발의)

1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2266호, 김남희의원 대표발의)

요양기관 설치·운영을 의무화하는 대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서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을 규정[18]하도록 의결된 바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또한, 개정안에 대하여 행정안전부·공단 및 일부 지방자치단체[19]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 장기요양기관 공급 현황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바, 이와 관련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재정 여건, 각 지역의 수요 대비 장기요양기관 공급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3) 거점지역 장기요양기관 설치·운영

□ 안 제6조의4는 지역특성에 맞는 장기요양사업의 표준 개발·보급, 관할 구역 장기요양기관 간의 연계·협력·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거점지역 장기요양기관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지역 현황에 적합한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보임.

---

17)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5년 7월 말 기준으로 장기요양기관 중 노인요양시설(시설급여기관)의 정원 대비 현원은 약 79%임. 참고로, 노인요양시설은 시설급여기관의 약 75%를 차지하고, 나머지 25%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임.

「노인복지법」 제34조(노인의료복지시설) ①노인의료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노인요양시설 :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18)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2. 20.>

19) 충청남도

□ 이와 관련하여, 개정안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거점지역 장기요양기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새로이 거점지역 장기요양기관을 설립하여야 한다고 해석될 수 있는데, 기존에 존재하는 장기요양기관을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으므로 지정·위탁 등의 형태로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임.

## 다. 관계부처 및 관련기관 의견

□ 보건복지부

- (안 제2조제4호 관련) 공공 장기요양기관의 범위를 확대하자는 의견에 공감하고,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시·도 사회서비스원이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범위를 규정하는 것에 동의함.

- (안 제4조제4항 관련) 장기요양기관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하도록 하려는 취지에 공감함.

- (안 제6조제1항 제4호·제5호 관련) 제4호의 경우 장기요양 급여제공 전망에 기반한 급여제공 계획을 기본계획에 포함시킬 필요성에 공감하나, 장기요양 실태조사에 급여 수요전망을 추가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자구를 일부 수정할 필요가 있음. 제5호의 경우 공공 장기요양기관 설치·운영 및 확충 계획에 대해 기본계획 추가 필요성에 동의함.

- (안 제6조의2제1항 관련) 장기요양사업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 항목에 인력수급 추계 및 장기요양급여 수요 전망을 포함하는 것은 실태조사 목적 및 성격과 맞지 않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지자체별 신뢰성 및 대표성 있는 데이터 산출을 위해서는 지자체별 다수 표본 확보가 필요한데, 한정된 예산 및 행정력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 (안 제6조의3 및 제6조의4 관련) 지자체에 과도한 재정 부담으로 작용하며, 민간 장기요양기관의 반발 우려가 큰 점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행정안전부

- (안 제6조의3 관련)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하면 별도의 재원조달 방안 없이 지자체의 공공 장기요양기관 설치·운영 의무화 시 재정건전성 악화가 우려됨.

□ 기획예산처

- (안 제6조의3 관련) 국공립 장기요양기관 확충 등에 대한 근거는 현행법에 이미 마련되어 있고, 현재 전체 장기요양기관 대비 국공립 비중이 약 1% 수준이고, 나머지 99%는 민간 기관인 점을 고려할 때, 국공립 기관 확대 시 민간시장이 구축될 우려가 있음. 따라서 일률적인 시설 확충을 추진하기보다는 이미 구축된 장기요양 인프라를 기반으로 서비스 질 제고 및 운영 효율성 강화를 위한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국민건강보험공단

- (안 제6조의3 관련)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지역별로 국·공립기관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부지확보, 공사기간 등 상당한 시간과 재정 투입이 필요하므로, 중앙·지방 정부의 중장기적인 추진 계획에 따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충청남도

- (안 제6조의3 관련) 장기요양기관의 공급이 이미 충분한 지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지자체 재정 여건 및 인력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한 탄력적인 제도 운영이 가능하도록 공공 장기요양기관 설치·운영은 재량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 (안 제2조 관련) 민간 장기요양기관과 공공 장기요양기관은 똑같은 기준으로 운영되어야 하므로 공공과 민간 구분은 불필요하고, 현재도 공립 장기요양기관의 경우에도 직영하는 기관은 극히 적고 대부분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 중임.

- (안 제6조의3 관련) 장기요양급여 수요 전망의 30%를 공공 장기요양기관에서 제공하도록 확대하는 입법을 하기에 앞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공 장기요양기관의 운영 실태와 비용 효율성, 노인복지 기여도 등에 대한 현황 분석 및 평가가 우선되어야 함.

- (안 제6조의4 관련) 거점지역 장기요양기관의 기준과 역할에 대한 논의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 개정안에 반대함.

□ 한국노인복지중앙회

- (안 제2조 관련) 사회복지법인과 비영리법인은 이미 공공성을 인정받은 것으로 볼 수 있고, 동일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의 1개소는 지자체 수탁, 1개소는 자체 설치한 기관일 때, 운영주체는 같으나 공공과 민간으로 각각 분류되어 사회적·제도적 차별로 인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사회복지법인과 비영리법인이 설치 또는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은 공공 장기요양기관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함.

- (안 제6조의3 관련) 제3항에서 규정한 국가의 지원 대상에 형평성을 위하여 시・도사회서비스원 등이 설치 또는 운영하는 공공 장기요양기관 등 모든 공공 장기요양기관이 포함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안 제6조의4 관련) 별도의 거점지역 장기요양기관을 신규 설치·운영하는 방안 외에 안 제6조의4제2항의 기능을 이미 수행하고 있는 전국 혹은 지역 단위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하여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포섭할 수 있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음.

□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 (안 제2조 및 제6조의3 관련) 공공기관 신설이 먼저가 아니라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이 우선될 필요가 있고,

공공 장기요양기관 설치 시 제도개선 없이는 해당 지역의 시장 경제를 혼란스럽게 할 수 있으므로 반대함.

- (안 제6조의4 관련) 장기요양기관은 이미 지역특성에 맞춰 운영되고 있으므로 굳이 기관을 별도 설치·지정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행정비용 증가의 우려가 있으므로 반대함.

□ 대한의사협회

- (안 제6조의3 및 제6조의4) 단순히 공공 장기요양기관 수를 늘리는 방향으로의 개정보다는 노인케어 영역에서 민간 의료기관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의료-돌봄 연계·통합 시스템을 구축하여 노인들의 삶의 질을 전체적으로 높이는 방향으로의 접근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의료와 요양서비스로 이원화되어 분리된 현행 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요망됨.

## 2. 장기요양요원의 권익 보호

###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공단으로 하여금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면서 수급자는 그 교육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수급자가 교육을 거부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장기요양기관이 교육을 거부한 수급자에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신설, 제35조제1항제2호 및 제69조제1항제1호의2 신설).

또한, 수급자 및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 대해 괴롭힘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또는 수급자 등이 급여외행위를 요구한 경우에도 그 수급자에 대하여 장기요양기관이 급여제공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며, 해당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둘 이상의 장기요양요원이 급여를 제공하도록 하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괴롭힘 등의 피해를 입은 장기요양요원이 고충의 해소를 요청하면 업무의 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것임(안 제28조의2제2항 신설, 제35조제1항, 제35조의4제1항 및 제7항).

개정안은 장기요양기관의 운영자가 수급자 및 그 가족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수급자와 그 가족에게 권익보호를 위한 사항을 안내하도록 의무화하며, 안내의무를 위반하면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도록 함(안 제35조의3제2항, 안 제35조의4제3항 및 안 제36조의2).

아울러, 개정안은 장기요양기관의 취소 또는 업무정지 명령이 있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해당 기관 소속 장기요양요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의무화함과 동시에 동 센터의 업무에 수급자 등에게 받은 피해에 대한 고충 상담 및 의료 지원,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사업 등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 37조제9항 신설, 안 제47조의2제1항 및 제2항).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신 설> | 제22조의2(수급자에 대한 교육) ① 공단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서를 송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교육(이하 이 조에서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0조에 따른 갱신 신청으로 제17조제1항의 장기요양인정서를 송부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br>② 수급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공단의 교육을 거부할 수 없다. 다만, 공단은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 또는 수급자의 대리인에게 제17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서를 송부한 경우에는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br>③ 제1항의 교육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 제28조의2(급여외행위의 제공 금지) ① (생 략) | 제28조의2(급여외행위의 제공 금지 등) ① (현행과 같음) |

| | |
|---|---|
| <신 설> | ② 수급자 및 그 가족은 장기요양요원에게 괴롭힘·폭언·폭행·상해 또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② (생 략) |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
| 제35조(장기요양기관의 의무 등) ①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로부터 장기요양급여 신청을 받은 때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입소정원에 여유가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5조(장기요양기관의 의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자로부터----------. <단서 삭제> |
| <신 설> | 1. 입소정원에 여유가 없는 경우 |
| <신 설> | 2. 수급자가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을 거부한 경우 |
| <신 설> | 3. 수급자가 제2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급여외행위를 요구한 경우 |
| <신 설> | 4. 수급자 및 그 가족이 제2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괴롭힘·폭언·폭행·상해 또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행위를 한 경우 |
| <신 설> | 5.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 ② ~ ⑦ (생 략) | ② ~ ⑦ (현행과 같음) |
| 제35조의3(인권교육) ① (생 략) | 제35조의3(인권교육) ① (현행과 같음) |
| ② 장기요양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해당 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수급자와 그 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실시하여야 한다. |
| <신 설> | 1. 노인인권교육을 포함한 수급자 권리에 관한 사항 |
| <신 설> | 2. 급여외행위의 제공 금지, 인권침해행 |

| | |
|---|---|
| | 위의 금지를 포함한 장기요양요원 권리에 관한 사항 |
| <신 설> | 3.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 ③ ~ ⑤ (생 략) | ③ ~ ⑤ (현행과 같음) |
| 제35조의4(장기요양요원의 보호)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인한 고충의 해소를 요청하는 경우 업무의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35조의4(장기요양요원의 보호) ① ----------. |
| 1. 수급자 및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폭언·폭행·상해 또는 성희롱·성폭력 행위를 하는 경우 | 1. ----------괴롭힘·폭언----------등의 행위---------- |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③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요양 수급자와 그 가족에게 장기요양요원의 업무범위, 직무상 권리와 의무 등 권익보호를 위한 사항을 안내할 수 있다. | ③ ----------안내하여야 한다. |
| ④ ~ ⑥ (생 략) | ④ ~ ⑥ (현행과 같음) |
| <신 설> | ⑦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괴롭힘·폭언·폭행·상해 또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행위를 한 때에는 제3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장기요양요원으로 하여금 해당 수급자에 대하여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

| | |
|---|---|
| 제36조의2(시정명령)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제36조의2(시정명령) ----------명하여야 한다. |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 <신 설> | 3. 제35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장기요양 수급자와 그 가족에게 장기요양요원의 권익보호를 위한 사항을 안내하지 아니한 경우 |
| 제3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의2, 제3호의5, 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제3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 ① ----------. ----------. |
| ② ~ ⑧ (생 략) | ② ~ ⑧ (현행과 같음) |
| <신 설> | ⑨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취소 또는 업무정지 명령이 있는 경우 해당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 제47조의2(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47조의2(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운영하여야 한다. |

| | |
|---|---|
| ②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② ----------.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 2. 장기요양요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지원 | 2. 장기요양요원의 보수교육 등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지원 |
| 3. (생 략) | 3. (현행과 같음) |
| <신 설> | 4.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괴롭힘·폭언·폭행·상해 또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행위로 받은 피해에 대한 고충 상담 및 의료 지원 |
| <신 설> | 5.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등 장기요양정책에 관한 조사·연구 |
| <신 설> | 6.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사업 |
| 4. (생 략) | 7. (현행 제4호와 같음) |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 제69조(과태료) ①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69조(과태료) ① ----------.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 <신 설> | 1의2. 제2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공단의 교육을 거부한 사람 |
| 2. ~ 3의3. (생 략) | 2. ~ 3의3. (현행과 같음) |
| <신 설> | 3의4. (생 략) |
| <신 설> | 3의5. (생 략) |
| 4. ~ 9. (생 략) | 4. ~ 9. (현행과 같음) |
| ②·③ (생 략) | ②·③ (현행과 같음) |

※ 시행일: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 나. 검토의견

### 1) 수급자에 대한 교육 실시 및 이수 의무화

□ 안 제22조의2는 공단이 장기요양인정서를 송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자에게 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함과 동시에 수급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공단의 교육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안 제69조제1항제1호의2는 수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거부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단,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서를 송부한 경우, 즉 수급자가 신체적·정신적인 사유로 장기요양인정 신청 등을 직접 수행할 수 없어 가족 등 타인이 대리한 경우[20]에는 해당 수급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21].

□ 개정안은 교육내용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수급자의 가택 등 폐쇄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장기요양급여 제공 업무의 특성상 장기요양요원이 폭력·폭언이나 성적 부당행위 등에 노출

---

20)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2조(장기요양인정 신청 등에 대한 대리)** ①장기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 또는 수급자가 신체적·정신적인 사유로 이 법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신청 또는 장기요양등급의 변경신청 등을 직접 수행할 수 없을 때 본인의 가족이나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이를 대리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할 지역 안에 거주하는 사람 중 장기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사람 또는 수급자가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신청 등을 직접 수행할 수 없을 때 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를 받아 그 신청을 대리할 수 있다.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2. 「치매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치매안심센터의 장(장기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사람 또는 수급자가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치매환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 또는 수급자가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신청 등을 할 수 없는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자는 이를 대리할 수 있다.

21) 장기요양인정 신청 등에 대한 대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주된 대상자인 노인등이 노화나 치매·중풍 등 각종 만성질환 등으로 심신·정신상 장애를 가졌거나 가족·친족의 부재 등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신청할 수 없는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본인 외에도 그 가족 또는 친족이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는 자에 대하여 신청을 대리할 수 있도록 규정(「노인장기요양보험법 해설」(국민건강보험공단) p.115)한 것임을 고려할 때, 장기요양인정 신청 등을 대리하도록 한 수급자의 현실적인 사정을 감안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임.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장기요양요원의 권익과 관련한 교육을 수급자가 이수하게 함으로써 장기요양요원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로 이해됨[22].

- 특히, 보건복지부의 '2022년 장기요양 실태조사'[23]에 따르면 장기요양요원이 지난 1년간 수급자 및 그 가족으로부터 폭언(21.9%), 폭행(13.3%), 성적 부당행위(8.3%) 등 피해를 당한 것으로 응답하였는바, 이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이수하도록 하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 장기요양요원 피해응답비율(지난 1년간) >**

(단위: %)

| 폭언<br>(비난,고함,욕설 등) | 폭행(주먹질,밀치기,<br>꼬집기,신체적위협 등) | 성적부당행위<br>(성희롱,성적신체접촉 등) |
|---|---|---|
| 21.9 | 13.3 | 8.3 |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년 장기요양실태조사, 2022

□ 다만, 개정안에 따른 공단의 수급자에 대한 교육 의무화, 수급자의 교육 이수 의무화 및 위반 시 제재 부과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먼저, 현행법 제35조의4제3항[24]은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수급자와 그

22) 단순 제도 안내 등을 위한 교육이라면 교육 이수 거부 시 과태료 등의 제재를 규정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임.

23)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년 장기요양실태조사, 2022. 12.
참고로, 장기요양실태조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조의2에 따라 3년 주기로 실시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5년 장기요양 실태조사는 2025년 11월에 완료하였으나, 최종보고서는 2026년 상반기 내 발간 예정으로 2026년 2월 현재 발간되지 않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조의2(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기요양사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4.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처우 및 규모에 관한 사항

2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4(장기요양요원의 보호) ③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요양 수급자와 그 가족에게 장기요양요원의 업무범위, 직무상 권리와 의무 등 권익 보호를 위한 사항을 안내할 수 있다.

가족에게 장기요양요원의 권익보호를 위한 사항을 안내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공단은 현재 장기요양사업의 관리운영기관[25]으로서 수급자 또는 그 가족 등에게 등급판정 이후 30일 이내에 장기요양보험 제도 전반, 요양보호사의 역할, 급여외행위의 제공 금지, 요양보호사의 권익 보호 등을 설명하는 급여이용설명회 또는 개별상담을 실시하고 있는데, 개정안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공단이 실시하는 교육은 이들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 또한,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생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점이 인정되어 장기요양급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이들에 대하여 교육 이수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수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등 제재를 부과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개정안은 이러한 측면을 감안하여 안 제22조의2제2항 후단에서 수급자가 신체적·정신적 사유로 장기요양인정 신청 등을 직접 수행할 수 없어 가족 등 타인이 대리한 경우 해당 수급자를 교육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신체적·정신적 사유로 직접 신청이 곤란한 경우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장기요양보험 제도 또는 신청 방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신청이 곤란한 경우에도 대리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설명인바, 2025년 기준으로 본인이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한 비율은 8%, 타인이 대리 신청한 비율이 92%임.

---

2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8조(관리운영기관 등)** ①장기요양사업의 관리운영기관은 공단으로 한다.
②공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7. 수급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정보제공·안내·상담 등 장기요양급여 관련 이용지원에 관한 사항

즉, 거의 대부분의 수급자가 안 제22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교육 이수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고 일부 수급자의 경우에만 교육 이수 의무를 지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신청 등을 대리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에도 노인성 질병을 갖고 있는 노인등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들에게 교육 이수 의무를 부과하고, 교육 이수를 거부한 경우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로 보이는 측면이 있음.

- 더욱이, 안 제22조의2제1항은 전단에서 장기요양인정서를 송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같은 항 후단에서 갱신 신청[26]으로 장기요양인정서를 송부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에 따르면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2년~5년)[27]마다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는데, 이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수급자의 입장에서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28].

---

2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0조(장기요양인정의 갱신) ①수급자는 제19조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장기요양급여를 계속하여 받고자 하는 경우 공단에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12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은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절차에 관하여 준용한다.

2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9조(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 ①제15조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최소 1년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8조(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법 제20조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이 갱신된 경우에 그 갱신된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장기요양 1등급의 경우: 5년
2. 장기요양 2등급부터 4등급까지의 경우: 4년
3. 장기요양 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의 경우: 2년

28) 한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1조는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또는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그 변경절차에 관하여 제17조를 준용하는데, 그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서를 송부한 경우에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것인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고, 만일 공단이 교육을 실시하고 수급자는 이를 이수하여야 하도록 하는 취지인 경우 이 또한 수급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1조(장기요양등급 등의 변경) ①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는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또는 내용을 변경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공단에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제12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은 장기요양등급의 변경절차에 관하여 준용한다.

참고로, 앞서 살펴본 공단이 실시하는 설명회 또는 상담은 “최초로”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 2) 교육 거부, 급여외행위 또는 괴롭힘 등을 하는 경우 급여 제공 거부 등

□ 현행법 제35조제1항[29]은 입소정원에 여유가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앞서 살펴본 장기요양실태조사에서 나타났듯이 수급자 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폭언·폭행, 성적 부당행위 등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안 제35조제1항은 입소정원에 여유가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수급자가 안 제22조의2에 따른 교육을 거부한 경우, 수급자가 제28조의2제1항[30]을 위반하여 급여외행위를 요구한 경우, 수급자 및 그 가족이 신설되는 안 제2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장기요양요원에게 괴롭힘[31]·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

---

29)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장기요양기관의 의무 등) ①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로부터 장기요양급여신청을 받은 때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입소정원에 여유가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0)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의2(급여외행위의 제공 금지) ① 수급자 또는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거나 제공할 경우 다음 각 호의 행위(이하 “급여외행위”라 한다)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수급자의 가족만을 위한 행위
2.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3.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31) 안 제28조의2제2항은 장기요양요원에게 ‘괴롭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괴롭힘의 의미가 다소 모호한 측면이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입법례들을 참고하여 보완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병역법」제31조의5(복무기관 내 괴롭힘의 금지) 복무기관의 장 또는 소속 직원은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사회복무요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복무기관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등의 행위를 한 경우 등에도 급여 제공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여 장기요양요원의 두터운 보호를 도모하려는 취지로 보임.

□ 다만, 교육 거부 등의 사유로 급여 제공이 거부되는 경우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32]이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여 그 생활에 지장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참고로, 지난 2022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폭언·폭행·상해 또는 성희롱·성폭력으로 유죄판결이 있는 경우 장기요양급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04756호, 민형배의원 대표발의)에 대하여 혼자서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없거나 가족의 돌봄을 기대하기 어려운 수급자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를 제한하는 것은 인간다운 생존을 위협하는 과도한 제한이므로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33]을 제시한 바 있음.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1. "괴롭힘 등"이라 함은 집단따돌림, 방치, 유기, 괴롭힘, 희롱, 학대, 금전적 착취,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등의 방법으로 장애인에게 가해지는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 행위를 말한다.

32)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를 때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는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자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장기요양급여"란 제15조제2항에 따라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한다.
제15조(등급판정 등) ②등급판정위원회는 신청인이 제12조의 신청자격요건을 충족하고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수급자로 판정한다.

33)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수급자 및 그 가족의 폭행·성희롱 등을 이유로 한 장기요양급여 제한은 신중해야", 2022.1.4.
"○ 아울러 장기요양급여 수급권은 수급자에게 개인위생 관리, 신체기능 유지·증진, 식사보조, 목욕 등 생명유지 활동을 제공하는 것으로 생존의 권리와 직결되는 중요한 권리이다. 특히 혼자서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없거나 가족의 돌봄을 기대하기 어려운 수급자의 경우 장기요양급여마저 제한된다면, 이는 인간다운 생존을 위협받는 과도한 제한일 수밖에 없다."
https://www.humanrights.go.kr/base/board/read?boardManagementNo=24&boardNo=7607588&searchCategory=&page=100&searchType=&searchWord=&menuLevel=3&menuNo=

- 아울러, 지난 2024년 유사한 취지에서 수급자 및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폭언·폭행·상해 또는 성희롱·성폭력 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급여외행위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2266호, 김남희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되어 심사되었으나, 돌봄을 받아야 하는 노인 등에게 또 다른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해당 부분은 제외하고 의결된 바 있음.

□ 또한, 추가되는 급여 제공 거부 사유별로 살펴보면, 수급자의 교육 거부를 사유로 급여 제공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앞서 검토하였듯이 교육의 중복 가능성, 수급자의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논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급여외행위 요구 시 급여 제공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관련하여 급여외행위의 범위에는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법 제28조의2제1항제3호)"도 포함되는 등 포괄적인 측면[34]이 있는데, 이러한 경우까지 급여 제공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수급자 및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괴롭힘 등의 행위를 한 경우를 급여 제공 거부사유로 규정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수급자 본

34) 현행법 제28조의2제2항은 급여외행위의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으나, 현행 보건복지부령은 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의2(급여외행위의 제공 금지)** ① 수급자 또는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거나 제공할 경우 다음 각 호의 행위(이하 "급여외행위"라 한다)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수급자의 가족만을 위한 행위
2.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3.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② 그 밖에 급여외행위의 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인이 아닌 그 가족이 괴롭힘 등을 한 경우나 수급자 본인이 치매 등으로 인하여 행위 통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폭언 등을 한 경우에도 급여 제공이 거부되도록 하는 것이 적정한지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한편, 안 제35조의4제7항[35]은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괴롭힘 등의 행위를 한 때에는 해당 수급자에게 둘 이상의 장기요양요원으로 하여금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둘 이상의 장기요양요원이 함께 급여를 제공하도록 하여 괴롭힘 등의 재발을 방지하고, 괴롭힘 등이 다시 발생하는 경우에도 그에 대해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이는데, 그 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다만, 둘 이상의 장기요양요원이 급여를 제공하면 그 급여비용이 증가하여 수급자의 본인부담금도 증가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 인력이 부족한 지역·기관에서는 장기요양급여 제공이 곤란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36]

### 3) 장기요양요원의 권익보호 안내 및 수급자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 의무화

□ 현행법 제35조의4제3항[37]은 장기요양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수급자

35) **안 제35조의4(장기요양요원의 보호)** ⑦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괴롭힘·폭언·폭행·상해 또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행위를 한 때에는 제3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장기요양요원으로 하여금 해당 수급자에 대하여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36) 한편, 안 제35조의4제7항에서는 "제3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장기요양요원으로 하여금 급여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제35조제1항의 예외로서 규정하고 있는데, 제35조제1항은 장기요양기관은 급여 신청을 받은 경우 급여 제공을 거부하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한 것으로 안 제35조의4제7항의 내용을 제35조제1항에 대한 예외 규정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보임.

와 그 가족에게 권익보호를 위한 사항을 안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를 안내“하여야 한다”고 의무화(안 제35조의4제3항)하고 이를 안내하지 않는 경우 시정명령[38]을 하도록(안 제36조의2제3호) 하고 있음.

□ 이 또한 앞서 살펴보았듯이 수급자 등이 행한 폭언, 폭행, 성적 부당행위 등으로 인해 장기요양요원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이를 예방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긍정적으로 보임.

□ 다만, 현재 장기요양기관이 수급자에게 장기요양요원의 권익보호

---

3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4(장기요양요원의 보호)** ③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요양 수급자와 그 가족에게 장기요양요원의 업무범위, 직무상 권리와 의무 등 권익보호를 위한 사항을 안내할 수 있다.

38) 개정안은 시정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한 현행법과 달리 안 제36조의2 각 호에 해당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고 의무화하고 있는데, 각 호를 살펴보면 장기요양기관이 법에서 규정하는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라는 점, 「기상법」, 「식품위생법」 등과 같이 시정명령을 의무화하고 있는 입법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다만,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증진법」 등 현행법과 같이 명령권자에게 재량을 부여하는 것이 보다 일반적인 입법례라는 점, 이후 살펴보겠지만 개정안에 따라 추가되는 시정명령 사유들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시정명령을 의무화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기상법」 제35조의4(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기상청장은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운영을 중단한 경우
2.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기준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식품위생법」 제71조(시정명령)**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영업하는 자와 이 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필요한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시정명령 및 인증 취소)**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이하 생략)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⑨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이하 생략)

**「노후준비 지원법」 제19조(시정명령)** 시·도지사(광역센터에 한정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지역센터에 한정한다)은 광역센터 또는 지역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이하 생략)

**「모자보건법」 제15조의8(시정명령)**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산후조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후조리업자에게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시정 명령)**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의료법」 제58조의10(의료기관 인증의 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이 인증 유효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을 취소하거나 인증마크의 사용정지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를 위한 사항을 안내하는지 여부가 장기요양기관 평가[39]의 지표로 반영되고 있고 평가 결과는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심사[40]에 반영되는 점을 고려할 때, 권익보호 사항 안내를 별도로 의무화할 필요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장기요양기관 평가 매뉴얼 중 평가지표 7(직원인권보호) >

| 평가지표 7 직원인권보호 | 직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 점수 2 |
|---|---|---|

기관 자체적인 홍보 등을 통해 직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는지 평가합니다.

| | 평가기준 | 평가방법 |
|---|---|---|
| ① | 직원과 수급자의 폭언·폭행·성희롱 예방을 포함하는 내용의 포스터(스티커 등)를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한다. 신설 | 현장 |
| ② | 직원과 수급자의 상호 존중을 포함하는 내용의 포스터(스티커 등)를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한다. 신설 | 현장 |
| ③ | 모든 수급자(보호자)에게 급여개시일까지 폭언·폭행·성희롱 예방 및 직원과 수급자의 상호 존중을 포함하는 내용을 문자 등으로 안내한다. 신설 | 기록 |
| | • 확인사항 : 일자, 수급자명, 보호자명(관계), 안내방법 | |
| ④ | 직원은 「직원」 인권침해대응지침 내용을 숙지하고 있다. 신설 | 면담 |

□ 한편, 현행법 제35조의3제2항[41]은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가 수급자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조문을 신설한 법률 제15443호「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

39)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장기요양급여의 관리·평가) ①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내용을 지속적으로 관리·평가하여 장기요양급여의 수준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이 제23조제5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기준·절차·방법 등에 따라 적정하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였는지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단의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40)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의4(장기요양기관 지정의 갱신)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제32조의3에 따른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그 지정을 유지하려는 경우에는 소재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정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까지 지정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갱신 기준 등) ① 법 제32조의4에 따라 지정의 갱신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공단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제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3. 제38조제1항에 따른 해당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

4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3(인권교육) ② 장기요양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해당 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률」(2018. 3. 13. 개정, 2018. 9. 14. 시행)의 취지 및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하고 있는 해당 교육의 내용을 살펴보면 동 조문은 장기요양기관에서 발생하는 수급자에 대한 학대 등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보임.

- 2018년 2월 20일 보건복지위원회가 제안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제안이유에서는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노인인권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급자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을 밝히고 있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제3항[42]은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기관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경우의 신고 요령 및 절차를 교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참고로, 현행법 제35조의3제1항[43]은 장기요양기관 운영자 및 종사자로 하여금 인권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그에 따라 운영자 및 종사자는 연 1회 4시간 이상의 인권교육을 받아야 함.

□ 그런데 개정안은 장기요양기관 운영자의 수급자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를 의무화하면서 대상을 수급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에까지 확대하고, 교육내용으로 수급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외에 장기요양요원의 권리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를 감안하여 수급자 등에 대한 인권교육을 통해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인권침해를 방지하려는 취지로 보임.

---

4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③ 법 제35조의3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해당 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기관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경우의 신고 요령 및 절차를 교육할 수 있다.

4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3(인권교육) ① 장기요양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운영하는 자와 그 종사자는 인권에 관한 교육(이하 이 조에서 "인권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 다만,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첫째, 장기요양요원의 권리에 관한 인권교육은 앞서 살펴본 현행법 제35조의4제3항[44]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수급자와 그 가족에게 할 수 있는 장기요양요원의 권익보호를 위한 사항 안내 또는 공단이 관리운영기관으로서 수급자 등에게 급여외행위의 제공금지 및 요양보호사의 권익보호 등을 설명하는 급여이용설명회·개별상담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 둘째, 제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제35조의3 신설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당초에는 장기요양기관을 설치·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해당 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수급자가 인권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여 인권교육을 의무화하려 했으나,

「노인복지법」[45]에서 노인복지시설 설치·운영자의 노인들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를 규정하면서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법체계를 고려하여 지침 등에서 규정하는 방안[46]을 고려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현행과 같이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되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셋째, 장기요양기관의 인권교육 실시가 의무화되는 경우에도 수급자 입장에서 해당 인권교육을 이수할 유인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

4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4(장기요양요원의 보호)** ③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요양 수급자와 그 가족에게 장기요양요원의 업무범위, 직무상 권리와 의무 등 권익보호를 위한 사항을 안내할 수 있다.

45) **「노인복지법」 제6조의3(인권교육)** ② 제31조의 노인복지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노인들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46) 참고로, 인권교육 실시 그 자체에 대한 지침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나,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지침에서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지침을 규정하고 있고, 장기요양기관 평가 시 이와 같은 노인인권보호지침을 보호자(수급자)에게 제공하는지 여부를 평가하고 있음.

점[47]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넷째, 현행법 제35조의3제3항[48] 전단은 제1항(기관운영자·종사자 대상 인권교육) 및 제2항(수급자 대상 인권교육)에 따른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인권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항 후단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은 인권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정을 받은 인권교육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인권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교육대상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현행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실시가 의무화되어 있는 기관운영자·종사자 대상 인권교육의 경우 보건복지부고시에서 인권교육기관으로 하여금 강사비, 교재제작비, 장소 임차료 또는 교통비를 교육대상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49]을 감안하면 개정안에 따라 수급자 대상 인권교육이 의무화되는 경우 인권교육

---

47) 온라인 교육을 하는 경우 노인 등에 해당하는 수급자 입장에서 디지털 기기를 조작하는 데 익숙치 않을 수 있고, 집합 교육을 하는 경우 수급자는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자로서 거동에 불편이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48)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3(인권교육)** ① 장기요양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운영하는 자와 그 종사자는 인권에 관한 교육(이하 이 조에서 "인권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장기요양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해당 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권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인권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u>이 경우</u> 예산의 범위에서 인권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u>**지정을 받은 인권교육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인권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교육대상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u>

49) **「재가장기요양기관 대상 인권교육 운영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교육"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것으로, 규칙 제27조의2제1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말한다.
**제3조(인권교육의 대상자)** ①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기관을 설치·운영하는 자라 함은 허가증(설치허가증, 신고필증, 지정서 등) 상의 대표자이다.
②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종사자는 영 14조의2에서 규정한 기관의 전 직원을 의미한다.
**제12조(인권교육 경비의 징수)** ① 법 제6조의3제3항에 따라 인권교육기관이 교육대상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교육비용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집합 교육: 강사비, 교재제작비, 장소 임차료(혹은 사용료)
2. 방문 교육: 강사비, 교재제작비, 장소 임차료(혹은 사용료), 교통비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집합 교육은 기초자치단체의 장이 인권교육 장소를 마련하고, 인권교육기관에서 강사와 교재를 지원할 수 있다.

기관이 수급자로부터 강사비 등을 징수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수급자에게 인권교육을 받기 위한 교육비 부담이 발생할 수도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다만,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인권교육기관은 교육비용을 교육대상자(장기요양기관 운영자 또는 종사자)로부터 징수하지 않고 있다는 설명임.

### 4)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운영 의무화

□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는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기관으로,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침해에 관한 상담 및 지원, 장기요양요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지원, 장기요양요원의 건강관리를 위한 사업 등을 수행함[50].

- 2026년 1월 기준으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는 전국적으로 15개소[51]가 설치·운영되고 있는데, 광역지방자치단체를 기준으로

50)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7조의2(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침해에 관한 상담 및 지원
2. 장기요양요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지원
3.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를 위한 사업
4.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업무 등에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2(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업무 등)** ① 법 제47조의2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취업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상담
2.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사업
3.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보호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는 법 제35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기요양요원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하여 심리·법률·고충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이하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라 한다)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실, 상담실, 교육실 등의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시설 및 전문인력 기준,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47조의2제3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할 때 충남, 경북, 경남, 대구 및 세종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음.

- 참고로,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운영에 일반적으로 연간 약 3~4억원이 소요되고, 경기도 수원시를 제외하면 현재 설치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는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였음.

□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이를 설치·운영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확충함으로써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보호에 기여하려는 취지로, 바람직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 다만,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운영 의무화와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안 제47조의3제2항제4호는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업무로서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괴롭힘·폭언·폭행·상해 또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행위로 받은 피해에 대한 고충 상담 및 의료 지원"을 추가하고 있는데, 이는 현행 제47조의3제2항제1호에 따른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침해에 관한 상담 및 지원"에 포함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52]

---

51) 서울 4개소, 인천 1개소, 광주 1개소, 대전 1개소, 울산 1개소, 경기 2개소, 강원 1개소, 충북 1개소, 전북 1개소, 전남 1개소, 제주 1개소

52) 참고로, 안 제47조의3제2항제6호에 따른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사업은 현행법 제47조의3제2항제4호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제1항제2호에서 이미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7조의2(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등) ②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4.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업무 등에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2(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업무 등) ① 법 제47조의2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사업

## 다. 관계부처 및 관련기관 의견

□ 보건복지부

- (안 제22조의2 관련) 수급자별 다양한 심신상태 및 생활환경 등을 고려할 때, 모든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 교육을 의무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안 제28조의2제2항 관련) 입법취지에 공감하나, 제28조의2의 조제목(급여외행위의 제공 금지)과 괴리가 있는 사항이므로 별도의 조문으로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함.

- (안 제35조제1항 관련) 수급자의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제한되는 사항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임. 교육 거부, 급여외행위 요구, 괴롭힘 등 행위를 이유로 수급권을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크며, 수급자 및 그 가족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됨.

- (안 제35조의3 관련) 장기요양기관의 인권교육 실시 의무화는 교육 인프라 구축 등 장기요양기관의 재정부담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아울러, 노인인권교육은 일반 국민도 한국보건복지인재원에서 제공하는 교육 수강이 가능하여, 현행 법체계에서도 수급자 및 가족 대상 인권교육이 가능하고, 교육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노인인권교육을 포함한 수급자 권리에 관한 사항)은 동법 제35조의3제5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하위법령에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안 제35조의4제7항 관련) 장기요양요원이 피해를 받은 경우, 둘 이상의 장기요양요원이 해당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도록 조치하는 것에 대하여 수용하나, 장기요양 재정이 소요되는 사항으로, 수가 반영 절차 등을 고려하면 적용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안 제36조의2 관련) 시정명령을 의무화하는 부분과 관련하여 경미한 위반 및 행정착오 등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시정을 명할 경우 비례원칙 위반 및 과도한 규제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한편, 시정명령 대상으로 권익보호 사항 미안내를 추가하는 것은 수용 가능함.

- (안 제47조의2 관련)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센터를 설치하지 못한 지자체의 경우 지방 재정여건에 따른 불가피한 것임을 고려하면, 지자체의 센터 설치 의무화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미설치 지자체가 조속히 센터를 설치하도록 지속 독려하겠음. 한편, 센터의 수행업무를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센터가 기 수행 중이거나 수행 가능한 업무로 판단되므로 동의함.

- (안 제69조제1항제1호의2 관련) 안 제22조의2(수급자에 대한 교육) 신설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과태료 부과 사유 추가도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국민건강보험공단

- (안 제22조의2, 제35조제1항제2호 및 제69조제1항제1호의2 관련) 수급자 교육의 중요성을 공감하며 공단의 수급자 교육을 의무하

도록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나, 수급자가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수급자의 상황과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고 수급권 침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수급자들의 필요와 상황에 맞는 자발적이고 유연한 방식으로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수용성을 높일 수 있음.

- 또한, 교육 거부를 사유로 한 장기요양기관의 급여제공 거부는 수급자의 급여이용을 통제하는 제재적 요소를 도입하는 것으로 동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교육 참여가 곤란한 고령·질병 상태의 수급자를 고려할 때 수급권 제한 및 과잉 규제의 위험이 있음. 아울러, 교육 거부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도 수급권 제한 및 과잉 규제의 위험이 있어 수용 불가함.

- (안 제35조의4제7항 관련) 괴롭힘 등의 행위로 인하여 두 명 이상의 장기요양요원이 제공하게 될 때, 장기요양 급여비용 역시 두 배로 인상되게 되고, 그에 따른 수급자의 본인부담금도 발생하게 되므로, 수급자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강제조항으로 규정하는 것은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의 부담이 클 수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음.

□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 (안 제22조의2 관련) 수급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하여 찬성함.

□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 개정안에 반대함.

□ 한국노인복지중앙회

- (안 제22조의2 및 제35조제1항제2호 관련) 보험료납부와 등급 판정을 통해 발생하는 법적 권리에 추가로 교육 이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장기요양보험가입자의 권리인 수급권을 조건부 권리로 전환시키는 것이며 사회보장제도의 기본 원칙인 보편성·접근성에 반함. 수급자의 신체·인지·건강 상태와 무관하게 교육에 대한 의무를 강제할 경우 치매·중증 질환자, 거동불편자, 디지털 취약계층, 보호자가 없는 독거노인 등에게 제도의 진입장벽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따라서 교육 이수 의무화에 반대하고 교육 이수 거부를 이유로 한 급여 제공 거부에 대해서도 반대함.

- (안 제28조의2제2항 관련) 통상 장기요양요원은 수급자를 직접 대면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종으로 한정되는데, 장기요양요원 외에도 수급자와 그 가족과 상시 소통하는 사무원, 사무국장 등의 경우에도 폭언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 (안 제36조의2 관련) 개정안은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행정기관이 탄력적으로 판단할 여지를 남겨둔 임의조항을 예산·인력·시설 등 행정여건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강제조항으로 변경할 경우 법의 현실적 이행이 어려워 오히려 법의 실효성을 약화시킬 수 있으므로 반대함.

## 3.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장기요양기본계획에 장기요양요원의 처우에 관한 사항을 넘어 처우 개선, 지위 향상 및 인력 확보 방안을 포함하도록 하고, 장기요양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도록 하며, 장기요양요원의 최소근로시간을 1일 5시간, 1주 25시간으로 규정함(안 제6조제1항제3호, 안 제35조의6제1항 및 제2항 신설).

□ 또한, 개정안은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적정 인건비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공단은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인건비와 운영비로 구분하여 지급하도록 하며, 이를 지급받은 장기요양기관은 그 용도에 맞게 사용하도록 하면서, 적정 인건비 기준을 위반하거나 지급받은 급여비용을 그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 대한 제재로서 시정명령 및 과태료를 규정함(안 제35조의6제3항부터 제7항까지, 안 제38조제2항・제6항, 안 제36조의2 및 제69조제1항).

□ 아울러, 개정안은 동일 기관 재직 여부와 상관없이 경력을 합산하여 장기요양요원에게 장기근속장려금을 지급하는 '장기근속장려금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장기요양위원회의 위원 수를 기존 16인 이상 22인 이하에서 18인 이상 24인 이하로 확대하며 위원 자격에 장기요양요원을 대표하는 자를 추가함(안 제35조의6제5항, 안 제46조제1항 및 제2항).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제6조(장기요양기본계획)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등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장기요양기본계획) ① ----------. |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 3. 장기요양요원의 처우에 관한 사항 | 3. ----------처우 개선, 지위 향상 및 인력확보 방안 |
| <신 설> | 4. (생 략) |
| <신 설> | 5. (생 략) |
| 4. (생 략) | 6. (현행 제4호와 같음)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신 설> | 제35조의6(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등)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br>② 장기요양요원의 최소근로시간은 1일에 5시간, 1주일에 25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장기요양요원의 명시적인 의사가 있는 경우 근로시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br>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장기요양요원의 지위를 향상하고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하여 장기요양요원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이하 “적정 인건비 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고 이에 맞추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정하여야 한다. |

| | |
|---|---|
| | ④ 적정 인건비 기준의 기본급은 월단위로 정하며 장기요양요원의 직무교육기간,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이동시간 및 대기시간 등이 반영되어야 한다.<br>⑤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일정기간 동안 근무한 장기요양요원에게 장기근속장려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 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에서 동일한 직종으로 근무한 경력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동일한 장기요양기관 여부를 불문하고 경력을 합산하여야 한다.<br>⑥ 장기요양기관은 적정 인건비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br>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근로조건의 보장, 적정 인건비 기준의 산정, 장기근속장려금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제36조의2(시정명령)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제36조의2(시정명령) ----------명하여야 한다. |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 <신 설> | 4. 제35조의6제6항을 위반하여 장기요양기관이 적정 인건비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
| <신 설> | 5. 제38조제6항을 위반하여 인건비로 지급받은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 제38조(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청구 및 | 제38조(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청구 및 |

| | |
|---|---|
| 지급 등) ① (생 략) | 지급 등) ① (현행과 같음) |
|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재가 또는 시설 급여비용의 청구를 받은 경우 이를 심사하여 그 내용을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에 사용된 비용 중 공단부담금(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을 해당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 ② ----------심사하여 그 내용을 인건비와 운영비로 구분하여 장기요양기관----------인건비와 운영비로 구분하여 해당----------. |
| ③ ~ ⑤ (생 략) | ③ ~ ⑤ (현행과 같음) |
| ⑥ 장기요양기관은 지급받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따라 그 일부를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인건비로 지출하여야 한다. | ⑥ ----------제2항에 따라 인건비로 지급받은 장기요양급여비용을----------. |
| ⑦·⑧ (생 략) | ⑦·⑧ (현행과 같음) |
| 제46조(장기요양위원회의 구성) ① 장기요양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6인 이상 22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제46조(장기요양위원회의 구성) ① ----------18인------24인----------. |
| ② 위원장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 자로 하고,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각각 동수로 구성하여야 한다. | ② ----------. |
| 1. 근로자단체, 사용자단체,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노인단체, 농어업인단체 또는 자영자단체 | 1. ----------말한다. 이하 같다---------- |

| | |
|---|---|
| 를 대표하는 자 | ---------- |
| 2. 장기요양기관 또는 의료계를 대표하는 자 | 2. 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요원 및 의료계를 각각 대표하는 자 |
| 3. (생 략) | 3. (현행과 같음) |
| ③·④ (생 략) | ③·④ (현행과 같음) |
| 제69조(과태료) ①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69조(과태료) ① ----------.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 <신 설> | 1의2. (생 략) |
| 2. ~ 3의3. (생 략) | 2. ~ 3의3. (현행과 같음) |
| <신 설> | 3의4. 제35조의6제6항을 위반하여 적정 인건비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장기요양기관 |
| <신 설> | 3의5. 제38조제6항을 위반하여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인건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장기요양기관 |
| 4. ~ 9. (생 략) | 4. ~ 9. (현행과 같음) |
| ②·③ (생 략) | ②·③ (현행과 같음) |

※ 시행일: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적용례: 제3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장기요양기관이 공단에게 재가 또는 시설급여비를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

## 나. 검토의견

### 1) 장기요양기관의 장의 노동관계법령 준수 의무

□ 일부 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요원에게 최저임금을 미지급하거나 임금을 체불하는 등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한 사례가 발생한 바 있음[53].

□ 이에 안 제35조의6제1항은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장기요양기관 장이 노동관계법령울 준수하도록 하여 장기요양요원을 비롯한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하려는 취지로 보임.

□ 다만, 노동관계법령은 해당 법령에 따라 준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개정안에 따라 그에 대한 준수 의무가 새로이 마련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2) 장기요양요원의 최소근로시간 규정

□ 보건복지부의 '2022년 장기요양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법정 수당 및 휴게·근로시간 보장(18.2%)'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고, 주당 평균 희망 근로시간은 30.8시간[54]이었으며, 대체적으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월평균 임금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월평균 근로시간이 낮아지는 것과 관련이 있었음.

□ 이에 안 제35조의6제2항은 장기요양요원의 명시적인 의사가 있어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기요양요원의 최소근로시간을 1일 5시간, 1주일 25시간으로 규정함으로써 근로시간을 보장하여

---

53) 매일노동뉴스, 밤새 일 시키고 최저임금 미지급, 노인시설 대표 '벌금형', 2023.9.1.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7064
매일노동뉴스 ,요양보호사 임금 5억원 체불, 형량은 '징역 1년', 2022.07.13.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9915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인장기요양기관 A법인 대표 B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경기연합뉴스, 임종성 의원, "요양보호사 사업장, 95% 근로기준법 위반", 2020.10.15.
https://www.kgyonhapnews.net/39123

54) 실태조사에 따른 월평균 근무시간은 106시간이었음.

임금 등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려는 것으로 이해됨.

특히, 「근로기준법」[5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56] 등에서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유급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퇴직금 등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에 따를 경우 모든 장기요양요원의 유급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퇴직금 등이 보장되고, 최소한의 근로시간 확보를 통해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처우가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근로기준법」[57]에서는 근로시간의 상한만을 규정하고 그 한도 내에서 당사자 자율의 원칙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58], 법률에 장기요양요원의 최소근로시간을

---

55)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56)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7)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소정근로시간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58) 다음과 같이 최소근로시간을 규정한 입법례도 있음.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최소근로시간)** ① 최소근로시간은 1주일에 15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가사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가 있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1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다.

규정할 경우 장기요양기관의 계약의 자유 및 경영상 자율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59]되고 있는 점, 장기요양기관의 급여 제공 여건 및 급여 수요에 따라 1주 25시간 미만의 근로를 제공하는 장기요양요원을 고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수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보임.

### 3) 적정 인건비 기준 마련 등

□ 보건복지부의 '2022년 장기요양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기요양요원의 근무 만족도는 임금수준, 고용안정성을 비롯하여 대부분 항목에서 2019년 대비 감소하였고, 장기요양요원의 월평균 임금은 127.1만원으로 나타났으며[60],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1순위는 임금수준 향상이라는 응답이 66.2%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59)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시간은 기관장과 종사자와의 사적계약을 통해 정해지는 것으로, 법률로 근로시간을 보장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특정 직종에 대해 최소 근로시간을 법률로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오히려 근로조건 결정의 자율성 침해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한국재가노인복집협회는 기관마다 근로조건이 다른 상황에서 해당 조항은 기관운영의 업무탄력성과 자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60) 동 실태조사에 따를 때 월평균 근무시간은 106시간으로 나타남.

< 2022년 장기요양실태조사에 따른 장기요양요원의 근무 만족도 >

〈표 7-13〉 장기요양요원의 근무 만족도(매우만족+만족)

(단위: %)

| 특성 | 2022년(A) | 2019년(B) | 변화(A-B)) |
|---|---|---|---|
| 임금수준 | 28.5 | 35.5 | -7 |
| 근무시간 | 46.6 | 51.0 | -4.4 |
| 근무유형 | 59.6 | - | - |
| 업무 내용 | 50.0 | 58.1 | -8.1 |
| 업무 강도 | 40.8 | 41.4 | -0.6 |
| 경력개발 및 승진 기회 | 25.0 | 22.9 | 2.1 |
| 고용안정성 | 43.6 | 51.2 | -7.6 |
| 종사자 복지후생 수준 | 35.3 | - | - |
| 직장내 인간관계 및 직장문화 | 49.5 | 62.4 | -12.9 |
| 장기요양기관 및 직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 36.4 | 41.2 | -4.8 |
| 업무 전반 만족도 | 46.2 | 54.4 | -8.2 |

자료 : 보건복지부, 2022년 장기요양실태조사(2022.12.)

□ 이에 안 제35조의6제3항 및 제4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장기요양요원의 적정 인건비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맞추어 급여비용을 정하도록 하며, 동 기준의 기본급은 월단위로 정하도록 하면서 직무교육기간·이동시간·대기시간 등을 반영[61]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6항은

61) 판례에 따르면 교육의 목적 및 근로제공과의 관련성, 교육의 주체 등을 기준으로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달라지고,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출장지로의 이동에 필요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원칙이되 출퇴근에 갈음하여 출장지로 출근 또는 출장지에서 퇴근하는 경우는 제외되며, 「근로기준법」 제50조는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보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인건비 기준을 마련하는 경우 근로 관계 법률·판례·해석 등을 감안하여 직무교육기간·이동시간·대기시간 등의 인건비 기준에의 반영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이를 일괄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 적정한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필요 시 반영 기준을 하위법령에서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어 보임.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에서는 직무교육기간·이동시간·대기시간 등을 반영하도록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음.

"근로자가 직무와 관련된 법령 또는 단체협약 · 취업규칙 등의 규정이나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외에 교육을 받는 경우, 그러한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법령 또는 단체협약 · 취업규칙 등의 내용과 취지, 해당 교육의 목적 및 근로제공과의 관련성, 교육의 주체가 누구인지, 사용자에게 이를 용인하여야 할 법령상 의무가 있는지 여부,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교육을 하게 되었는지 여부, 근로자가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때에 받을 불이익의 존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2다203798 판결)"

"우리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출장에 있어 통상 필요한 시간을 산정할 경우 출장지로의 이동에 필요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원칙이나 출퇴근에 갈음하여 출장지로 출근 또는 출장지에서 퇴근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다만, 장거리 출장의 경우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역에서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까지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근기 68207-1909, 2001.6.14.)"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③ 국가는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동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과함.

또한, 현행법령[62]은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급여제공시간 또는 장기요양등급 및 급여제공일수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도록 하되, 1년간 지급받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인건비로 지출하여야 할 비율[63]을 정하여 준수하도록 하고 있는데,

안 제38조제2항 및 제6항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더욱 개선하기 위하여 공단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인건비와 운영비로 구분하여 통보·지급하도록 하고, 장기요양기관은 인건비로 지급받은 급여비용은 인건비로만 지출하도록 함.

---

6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등)** ⑥ 장기요양기관은 지급받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따라 그 일부를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인건비로 지출하여야 한다.

**제39조(장기요양급여비용 등의 산정)** ③제1항에 따른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과 특별현금급여의 지급금액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및 항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산정방법 및 항목)**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및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세부적인 산정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재가급여
   가.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 : 방문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나. 방문목욕 :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 주·야간보호 : 장기요양 등급 및 1일당 급여제공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라. 단기보호: 장기요양 등급 및 급여제공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마. 기타재가급여 : 복지용구의 품목별, 제공 방법별 기준으로 산정한다.
2. 시설급여 : 장기요양 등급 및 급여제공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의2(인건비 지출비율)** ④ 제1항의 인건비 지출비율은 <u>1년(1월 1일 ~ 12월 31일)간 제공된 급여에 대해서</u> 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요원에게 지급한 제3항에 따른 인건비가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고, 계산결과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63)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의2(인건비 지출비율)**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법 제38조제6항에 따라 급여유형별로 지급받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다음 표에 명시된 비율(이하 '인건비 지출비율'이라 한다)에 따라 그 일부를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인건비로 지출하여야 한다.

| 구분 | 장기요양요원 | 인건비 지출비율(%) |
|---|---|---|
| 노인요양시설 |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 62.6 |
| 노인요양<br>공동생활가정 |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 65.2 |
| 주야간보호 |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 48.6 |
| 단기보호 |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 58.9 |
|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 87.0 |
| 방문목욕 | 요양보호사 | 49.7 |
| 방문간호 |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 | 60.2 |

아울러, 안 제36조의2 및 제69조제1항은 장기요양기관이 적정 인건비 기준을 위반한 경우 또는 인건비로 지급받은 급여비용을 다른 용도로 지출한 경우 시정명령을 하도록 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이는 적정 인건비 기준의 마련 및 그 준수 등을 통해 장기요양요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보장함으로써 장기요양요원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려는 취지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 다만, 국가가 장기요양요원의 임금과 관련된 적정 수준의 인건비 기준을 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시정명령[64]과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것은 사적계약 및 경영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은 없는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동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장기요양요원의 적정 인건비 기준을 마련하고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인건비 지출 비율을 정할 때 이를 고려하도록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2266호, 김남희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되어 심사된 바 있으나, 사적 계약으로 임금이 정해지는 상황에서 그 기준을 보건복지부가 일률적으로 정하기 곤란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해당 부분은 제외하고 의결된 바 있음.

---

64) 제36조의2에 따른 시정명령 위반 시 업무정지 또는 장기요양기관 지정 취소의 대상이 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 ①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의2, 제3호의5, 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3의6. 제36조의2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회계부정 행위가 있는 경우

- 참고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65] 에서는 국가가 사회복지법인·시설 등에 소속된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적정 인건비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되,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3년마다 지방자치단체별 준수율을 조사·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에 관한 권고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한편, 급여비용을 인건비와 운영비로 구분하여 통보·지급하도록 하고 인건비로 지급받은 급여비용은 인건비로만 지출하도록 하는 것과 관련하여, 이를 위하여는 보건복지부 또는 공단이 급여비용 중 인건비를 구체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나 그 수준을 적정하게 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고, 결정된 이후 그 수준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장기요양기관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4) 장기근속장려금 제도의 근거 명시 및 지급기준 완화

□ 장기요양요원이 동일한 장기요양기관에서 장기간 종사하도록 하여 전문성을 제고하고 수급자의 신뢰와 안정감을 강화하며 장기요양

---

65)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③ 국가는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제3항에 따른 기준의 지방자치단체별 준수율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공표하여야 한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4조(보수수준에 관한 권고기준)**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과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을 비교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에 관한 권고기준을 정할 수 있다.

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66]에 근거하여 2017년부터 장기요양보험재정에서 장기근속장려금이 지급되고 있음.

장기근속장려금은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 중 "동일한 장기요양기관에서" 매월 일정 시간[입소형(시설급여,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 120시간, 방문형(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 60시간] 이상 계속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자를 지급대상으로 하며, 급여유형과 근무기간에 따라 월 5만원~18만원이 지급되고 있음.

< 장기근속장려금 지급금액 >

| 근속기간 | 0년 | 1년 | 2년 | 3년 | 4년 | 5년 | 6년 | 7년 이상 |
|---|---|---|---|---|---|---|---|---|
| 지급금액 | - | 5만원 | | 방문 11만원<br>입소 14만원 | | 방문 13만원<br>입소 16만원 | | 방문 15만원<br>입소 18만원 |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 안 제35조의6제5항은 일정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한 장기요양요원에게 지급하는 '장기근속장려금'의 지급 근거를 법률에

66)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의4(장기근속 장려금) ① 기관기호가 동일한 장기요양기관에서 하나의 직종으로 계속 근무하고 있는 각 호에 따른 직종의 종사자에 대하여 장기근속 장려금을 산정할 수 있다.
1.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2.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 기관에서 직접 수급자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
3.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 제57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가산 대상 종사자[사회복지사, 팀장급 요양보호사 및 간호(조무)사]
4.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 전량 직접 조리하여 급식을 제공하는 기관에 근무하는 영양사, 조리원
5. 노인요양시설 : 세탁물을 전량 자체 처리하는 기관에 근무하는 위생원

명시하고, 기간 산정 시 동일한 장기요양기관 여부를 불문하고 경력을 합산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는 현행 고시 대비 장기근속장려금 지급대상을 확대하여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다만, 장기근속장려금 제도는 수급자-종사자 간 신뢰와 안정감이 형성되도록 하고, 보다 안정적인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개정안에 따르면 장기요양요원이 동일 기관에서 지속적으로 근무하도록 유도할 경제적 유인이 적어질 수 있고, 이 경우 수급자-종사자 간 신뢰 형성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또한, 개정안에 따라 다른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을 합산하여 장기근속장려금을 지급할 경우 지급대상자 및 지급액의 규모가 현행보다 증가하게 되므로 장기요양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 5) 장기요양위원회 위원으로 장기요양요원을 대표하는 사람 추가

□ 장기요양위원회는 장기요양보험료율, 가족요양비·특례요양비·요양병원간병비의 지급기준, 재가·시설급여 비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는 위원회임.[67]

6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5조(장기요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장기요양위원회를 둔다.
1. 제9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율
2.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및 요양병원간병비의 지급기준
3. 제39조에 따른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사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6조(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45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현행법 제46조 및 동법 시행령[68]에서는 장기요양위원회를 위원장(보건복지부 차관)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6인 이상 22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위원장이 아닌 위원은 가입자대표(근로자단체, 사용자단체, 시민단체, 노인단체, 농어업인단체 또는 자영자단체의 대표자), 공급자대표(장기요양기관 및 의료계의 대표자), 공익대표(재정경제부 및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학계·연구계의 대표자, 공단 이사장이 추천하는 자)를 각각 동수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69]

- 이에 따라 현재 장기요양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가입자·공급자·공익대표 위원 각 7인씩 총 22인으로 구성되어 있음.

---

1.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의 기준
2.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의 기준
3. 법 제28조에 따른 월 한도액의 결정
4. 그 밖에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68)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6조(장기요양위원회의 구성)** ① 장기요양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6인 이상 22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 자로 하고,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각각 동수로 구성하여야 한다.
1. 근로자단체, 사용자단체,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노인단체, 농어업인단체 또는 자영자단체를 대표하는 자
2. 장기요양기관 또는 의료계를 대표하는 자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장기요양에 관한 학계 또는 연구계를 대표하는 자, 공단 이사장이 추천하는 자
③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7조(공무원 위원)** 법 제46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이란 재정경제부 및 보건복지부의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각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를 말한다.

69) 현행법상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15인 이상 21인 이하로 구성할 수 있으므로, 가입자·공급자·공익대표를 각각 5~7인씩 동수로 하여 위원 구성이 가능함.

< 현행 장기요양위원회 구성 현황 >

| 가입자대표 (7인) | | 공급자대표 (7인) | | 공익대표 (7인) | |
|---|---|---|---|---|---|
| 근로자 | 전국노동조합총연맹 | 의료 | 대한의사협회 | 정부 | 복지부 고위공무원 |
| |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 | 대한한의사협회 | | 재경부 고위공무원 |
| 사용자 | 한국경영자총협회 | | 대한간호협회 | 공단 | 건보공단 이사장 추천 |
| | 중소기업중앙회 | 장기요양기관 | 한국노인복지중앙회 | 학계 | 학계 4인 |
| 시민 | 한국소비자연맹 | |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 | |
| 노인 | 대한노인회 | |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 | |
| 농어업 | 농협중앙회 | |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 | |

□ 이와 관련하여, 2024년 국민권익위원회는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보수교육 의무화 등 장기요양요원 관련 사항에 대해서도 심의하고 있으나[70] 장기요양위원회의 구성에 장기요양요원의 약 90% 이상을 차지하는 요양보호사 대표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요양보호사를 대표하는 위원을 장기요양위원회에 위촉하도록 보건복지부에 권고한 바 있음.[71]

□ 이에 개정안은 장기요양위원회를 18인 이상 24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위원 수를 확대하고, 장기요양요원을 대표하는 자를 장기요양위원회의 위원으로 추가하려는 것으로, 장기요양보험 제도 운영 관련 주요사항을 심의하는 장기요양위원회에 장기요양요원 대표가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하여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70) 참고로, 장기요양위원회에서는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경력인정 확대 등 인력확보 방안(2023년 제5차 위원회),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의무화 추진계획(2024년 제1차 위원회),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 강화 및 외국인력 활용 확대방안(2024년 제2차 위원회) 등 장기요양요원 관련 사항을 심의한 바 있음.

71) 국민권익위원회, 장기요양요원 보호 및 장기요양기관 부담 완화 방안(의안번호 제2024-657호), 2024. 12. 9. 의결

□ 첫째, 개정안은 위원 수를 위원장 1인 포함 16~22인에서 18~24인으로 확대하고 있으나, 장기요양위원회 구성 시 위원장이 아닌 위원은 가입자·공급자·공익대표 간 동수로 구성[72]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현행 각 5~7인에서 각 6·7인이 되어야 하도록 하는 것에 그쳐 실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만일 공급자 대표에 장기요양요원을 추가하기 위하여 각 8인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경우 위원 수의 상한을 25인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참고로, 「국민건강보험법」[73] 및 동법 시행령[74]에서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위원장(보건복지부 차관) 1인 외에 가입자대표(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 추천 각 2명,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농어업인단체 및 자영업자단체 추천 각 1명), 공급자대표(의료계 대표단체 및 약업계 대표단체 추천 8명), 공익대표(재정경제부 및 보건복지부 공무원 각 1명, 공단 이사장 및 심평원장이 추천하는 각 1명, 건강보험 관련 전문가 4명)를 각 8명씩 동수로 하여 총 25명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둘째, 현행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75]에서는 장기요양위

---

72) 이는 장기요양보험 관련 주요사항에 대한 심의과정에서 이해관계자 간 의견이 균형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73) **「국민건강보험법」 제4조(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4항제4호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각 2명
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 소비자단체, 농어업인단체 및 자영업자단체가 추천하는 각 1명
3. 의료계를 대표하는 단체 및 약업계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8명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8명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2명
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원장이 추천하는 각 1명
다. 건강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4명

7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4조(공무원인 위원)** 법 제4조제4항제4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란 재정경제부와 보건복지부 소속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그 소속 기관의 장이 1명씩 지명하는 사람을 말한다.

원회의 설치 목적 및 심의사항으로 장기요양보험료율, 급여비용,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 등 주로 장기요양보험재정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지는 않고 있는데,

개정안의 입법취지와 같이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등을 위하여 장기요양위원회에 장기요양요원 대표를 추가하도록 할 경우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장기요양요원의 처우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될 필요가 있어 보임.[76]

## 다. 관계부처 및 관련기관 의견

□ 보건복지부

- (안 제6조제1항제3호 관련) 장기요양요원 지위 향상 및 인력확보 방안을 기본계획에 추가할 필요성에 동의함.

- (안 제35조의6 관련) 안 제2항과 관련하여 장기요양요원의 근로

---

7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5조(장기요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장기요양위원회를 둔다.
1. 제9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율
2.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및 요양병원간병비의 지급기준
3. 제39조에 따른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사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6조(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45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의 기준
2.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의 기준
3. 법 제28조에 따른 월 한도액의 결정
4. 그 밖에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76) 참고로, 현행법 제6조에서는 장기요양기본계획의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조(장기요양기본계획)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등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3. 장기요양요원의 처우에 관한 사항

시간은 근로기준법에 의거 장기요양급여 제공 상황에 따라 기관장과 종사자와의 사적계약을 통해 정해지는 것으로, 법률로 근로시간을 보장하는 것은 부적절함.

- 안 제3항 및 제4항과 관련하여, 장기요양 제도는 인건비를 직접 보조하고 있지 않고, 장기요양기관은 지급받은 급여비용 내에서 종사자와의 사적 계약을 통해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어 법률로 인건비 기준을 정할 경우, 장기요양기관의 경영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

- 안 제5항의 경우, 장기근속장려금은 동일 기관의 동일 수급자에게 장기간 연속적인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수급자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수급자의 심리적 안정감과 친밀감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서, 2025년 장기요양위원회에서의 다양한 논의 및 의결(11.4)을 통해 장기근속장려금 제도개선이 대폭 이루어진 점을 감안하여, 향후 제도 운영 방향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음.

- (안 제36조의2제4호 관련) 안 제35조의6(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등) 신설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시정명령 대상 추가도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안 제38조 관련) 현재 장기요양요원의 최소한의 인건비 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인건비 지출비율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인건비와 운영비를 구분하여 지급할 필요성이 낮고, 인건비를 직접 보조하는 타 사회복지사업과는 달리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서비스 제공에 대한 반대급부로 급여비용을 지급하면 기관은 지급

받은 급여비용 내에서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므로, 급여비용을 인건비와 운영비로 구분하여 지급하고 지출을 강제하는 것은 경영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안 제46조 관련) 장기요양위원회는 보험료율 및 수가 등에 대한 심의·의결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로, 가입자·공급자·공익 대표를 각각 동수로 구성하여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합리적 의사결정을 도모하는데, 장기요양요원을 대표하는 자를 추가할 경우 특정 대표가 과다 구성되므로 타 단체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할 필요가 있음.

- (안 제69조제1항제3호의4 및 제3호의5) 안 제35조의6(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등) 신설 및 안 제38조(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등) 및 개정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과태료 부과 사유 추가도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국민건강보험공단

- (안 제35조의6 관련)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개선 취지에는 공감하나 해당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입법목적과는 다른 내용으로 수용불가함.

- 안 제1항의 경우, 이미 「근로기준법」에서 당연히 준수하여야 하는 사업주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어 법령 간 중복되고, 제2항의 경우, 재가급여의 특성 상 수급자의 사망 등으로 부득이하게 근로의 중단이 발생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요원의 최소근로시간을 법으로 규정할 시 소규모 기관은 준수가 어려워

운영상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음. 또한, 특정 직종에 대해 최소 근로시간을 법률로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오히려 근로조건 결정의 자율성 침해 소지가 있음.

- 제3항 및 제4항과 관련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은 포괄수가제로 인건비와 운영비 분리 자체가 어려우므로, 직종별 적정 인건비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장기요양기관의 운영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안임. 만약, 월 단위로 적정 인건비를 정한다면, 현행 가정방문형 급여비용은 1회 방문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산정하고 있으므로 현행 급여제공 시간당 수가체계와 충돌되어 적용이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마지막으로 제5항의 경우, 장기근속장려금 지급기준을 동일한 장기요양기관이 아닌 전체 장기요양기관의 근무연수를 모두 합하여 지급하는 것은 향후 장기요양 재정여건과 국민의 보험료 부담 가중 등을 고려 시 매우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사안임.

- (안 제36조의2제4호 관련) 법 제35조제2호에서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기준을 정하고 있고 동법 제36조의2제2호에서 재무회계기준 위반 시 시정을 명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개정실익이 크지 않고, 국가가 장기요양요원의 임금과 관련된 적정 수준의 기준을 정하고 위반 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사적계약 및 경영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안 제38조 및 제36조의2제5호 관련) 현재 장기요양보험 제도는 포괄수가제로 운영되고 있음. 만일 장기요양 수가를 인건비와

운영비로 구분하게 된다면, 포괄수가제의 본질인 '포괄적 보상 구조와 비용 사용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비목별 수가제 또는 실비 정산 체계로의 전환을 초래하게 될 것임. 이는 장기요양 제도 설계의 기본 전제를 훼손하여 더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음. 또한, 인건비와 운영비로 구분 시 공단이 개별 기관의 임금 등 노무관리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게 될 뿐 아니라 임금 결정의 주체가 공단으로 인식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공단이 사용자성 논쟁 등 법적 분쟁으로 확장 가능성도 있음. 더불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 자율성 침해에 따른 공급자 반발 가능성이 높고, 부당청구 확인 시 환수·정산 과정이 복잡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관리부담도 급증할 우려가 있음. 결론적으로, 종사자 처우개선이라는 목적과는 달리, 공급자 단체 반발, 행정 복잡성, 사용자성 논쟁이라는 중장기 제도적 리스크를 오히려 더 야기할 수 있어 인건비와 운영비를 구분하는 것은 장기요양위원회 등을 통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사료됨.

- (안 제46조 관련) 장기요양위원회는 장기요양 정책에 관하여 심의하기 위한 기구로서, 정책의 중요 부분인 재정 수입·지출에 이해관계가 있는 가입자·공급자 및 공익대표를 심의·의결에 참여하게 하여 결정함. 이러한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을 고려하면, 장기요양요원 대표자를 위원으로 추가하여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사항을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은 장기요양급여 및 비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위원회의 성격과 법 취지에 맞지 않음.

□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 (안 제35조의6 관련) 현재 장기요양급여기준 고시에 장기요양요원 인건비 지출비율이 정해져 있어 이를 준수하고 있는바, 인건비 기준을 마련하여 인건비 기준에 따른 충분한 적정 수가를 책정한다면 이를 선행조건으로 수용가능함.

- (안 제38조 관련) 장기요양기관은 사회복지 재무회계기준을 준용하는바 인건비와 운영비를 구분하여 회계를 하고 있고,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고시에 인건비 지출비율이 정해져 있어 이를 준수하여 회계관리를 하고 있으므로 불필요하여 반대함.

□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 개정안에 반대함.

□ 한국노인복지중앙회

- (안 제35조의6 관련) (제2항 관련)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는 현 고시의 '월 기준근무시간'을 준수하기 위해 매월 작성한 근무표에 따라 근무하고 있음. 이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 급여비용 감액, 가산 미인정 등의 조치가 이미 존재함. 또한, 장기요양 현장에서는 극심한 구인난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선에서 종사자의 연차·병가·경조사 등 처우를 보장하고자 탄력적인 운영이 요구될 때가 있음. 방문요양,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는 서비스 시간을 수급자들이 원하는 만큼 신청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시간을 정한다는 것은 운영상 문제가 있음.

- (제4항 관련) 기본급 책정에 급여유형별(시설/재가)로 차이를 반영하지 않는다면 노동강도가 큰 시설급여에서 재가급여로의 인력이탈 가능성이 염려됨.

- (제5항 관련)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명시된 내용으로 중복 명문화가 불필요하고, 동 고시 제11조의4(장기근속 장려금)에 따라 장기근속 장려금의 지급 주체는 공단으로서,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전달자 역할이며, 상위 법률상 장기요양기관의 장에게 지급 의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재원 출처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개정안과 같이 동일한 장기요양기관에서의 근속 여부를 불문한다면 장기요양요원의 이직을 억제하기 어려워 제도의 취지에 어긋남.

- (안 제38조 관련) 청구받은 급여비용을 인건비와 운영비로 구분하여 통보 및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수가 구조상 불가능하며 현장의 운영역량을 제한하는 내용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의2(인건비 지출비율)에 급여유형별로 지급받은 장기요양급여비용에서 지출해야 하는 인건비 비율이 명시되어 있어 개정안과 배치됨. 현재 규정하고 있는 '인건비 지출비율'과 개정안의 내용은 고시의 구인난(채용난) 관련 특례인 '퇴사 특례[고시 제67조(인력배치기준 위반감액산정 특례)[77]]'와 상충함.

---

77)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67조(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산정 특례)** ② 시설장,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물리(작업)치료사, 영양사, 조리원, 위생원, 보조원(운전사)의 갑작스런 퇴사로 인해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게 된 경우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면 그 후임자를 채용하기까지 퇴사 신고한 직원의 근무종료일 다음날부터 30일(공휴일,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 제외)동안 그 직종의 1인이 "1일 8시간씩(주・야간보호기관의 보조원(운전사)은 1일 4시간)"근무한 것으로 인정한다.

□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 (안 제35조의6제2항 관련) 기관마다 근로조건이 다른 상황에서 해당 조항은 기관운영의 업무탄력성과 자율성을 저해하고 불필요한 행정요인을 만들어낼 수 있어 삭제가 필요함.

---

1. 퇴사한 직원이 근무종료일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해당 급여유형에서 직전 3개월 간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 근무하여야 한다. 다만, 근무종료일이 속하는 달에 월 기준근무시간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근무종료일이 속하는 달을 포함하여 3개월 간 월 기준근무시간 이상 근무하여야 한다.
2. 기관은 적극적인 채용노력을 하였으나 채용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는 입증자료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근무인원이 부족한 기간 동안 입소자가 적정한 서비스를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30일을 초과한 날부터 기관당 연 2회에 한하여 10일을 추가하여 근무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종사자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한 근무시간 인정은 1회당 최대 4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1. 직원 채용을 위해 2회 이상 공고
2. 공고 1회당 10일 이상 공고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종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부터 제2항 및 제3항의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해당 기관에서 퇴사하지 아니하고, 직종만 변경하여 근무한 날
2. 제2항 및 제3항의 특례를 적용받는 직원이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특례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해당 기관에 재취업하여 근무한 날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된 것 이외에 갑작스런 퇴사로 인한 인력배치 기준 위반 시 특례 적용 등에 대한 세부기준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 4. 장기요양기관의 관리 강화 등

###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공공성·전문성·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할 의무를 신설하고,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을 단축(6년 → 4년)하며, 장기요양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공개하도록 함(안 제4조제8항 신설, 제32조의3 및 제47조제3항 신설).

□ 또한, 관리운영기관으로서의 공단의 업무를 확대하고,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에 따라 공단이 고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의무를 신설하며, 평가 최하위 등급 3회 이상인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취소하도록 함(안 제48조제2항, 제54조제3항 신설 및 제37조제1항제9호 신설).

□ 마지막으로, 개정안은 공단에는 사례관리회의를, 지방자치단체에는 지역사례관리회의를 구성·운영하도록 하는 한편, 복합적인 장기요양 욕구를 가지고 있어 통합적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자, 급여외행위를 요구하거나 장기요양요원에 대하여 괴롭힘·폭행 등의 행위를 한 수급자 등에 대한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 작성 시 사례관리회의·지역사례관리회의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고, 급여를 받고자 하는 사람 또는 수급자의 거주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공단의 자료제출 요구권을 신설함(안 제54조의2 신설, 제54조의3 신설, 제17조제5항·6항 신설 및 제60조제1항 신설).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br>① ~ ③ (생 략)<br>④ (생 략)<br>⑤ ~ ⑦ (생 략)<br><신 설> |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br>① ~ ③ (현행과 같음)<br>④ (생 략)<br>⑤ ~ ⑦ (현행과 같음)<br>⑧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공공성, 전문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 제17조(장기요양인정서) ① (생 략)<br>② 공단은 등급판정위원회가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판정의 심의를 완료한 경우 수급자로 판정받지 못한 신청인에게 그 내용 및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공단에 대하여 이를 통보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공단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br>③·④ (생 략)<br><신 설> | 제17조(장기요양인정서) ① (현행과 같음)<br>② ----------. ----------구청장은----------.<br>③·④ (현행과 같음)<br>⑤ 공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54조의2에 따른 사례관리회의와 제54조의3에 따른 관할 지역사례관리회의 의견을 들어 제3항에 따른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다.<br>1. 복합적인 장기요양 욕구를 가지고 있어 통합적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자<br>2. 도서·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거주하 |

| | |
|---|---|
| | 는 자<br>3.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가족 등으로부터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자<br>4. 제28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수급자 또는 그러한 행위를 한 가족과 동거하는 수급자 |
| <신 설> | ⑥ 제5항에 따른 사례관리회의 및 지역사례관리회의의 의견 청취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 제32조의3(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6년으로 한다. | 제32조의3(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4년----------. |
| 제3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의2, 제3호의5, 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제3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 ① ----------. ----------. |
| 1. ~ 8. (생 략) | 1. ~ 8. (현행과 같음) |
| <신 설> | 9. 장기요양기관이 제54조에 따른 공단의 평가 결과 3회 이상 최하위등급을 받은 경우 |
| 제47조(장기요양위원회의 운영) ①·② (생 략) | 제47조(장기요양위원회의 운영) ①·② (현행과 같음) |
| <신 설> | ③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고 공개하여야 한 |

| | |
|---|---|
| | 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③ (생 략) |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
| 제48조(관리운영기관 등) ① (생 략) | 제48조(관리운영기관 등) ① (현행과 같음) |
| ②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 ② ----------. |
| 1. ~ 6. (생 략) | 1. ~ 6. (현행과 같음) |
| 7. 수급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정보제공·안내·상담 등 장기요양급여 관련 이용지원에 관한 사항 | 7. ----------가족, 장기요양기관 및 장기요양요원----------이용지원 및 안전조치---------- |
| 8. ~ 13. (생 략) | 8. ~ 13. (현행과 같음) |
| <신 설> | 14. 공공 장기요양기관 운영 표준 수립·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 <신 설> | 15. 제54조의2제1항에 따른 사례관리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 |
| 14. (생 략) | 16. (현행 제14호와 같음) |
| ③·④ (생 략) | ③·④ (현행과 같음) |
| 제54조(장기요양급여의 관리·평가) ①·② (생 략) | 제54조(장기요양급여의 관리·평가) ①·② (현행과 같음) |
| <신 설> | ③ 공단은 평가 결과 그 내용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③ (생 략) |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
| <신 설> | 제54조의2(사례관리회의 등) ① 공단은 장 |

| | |
|---|---|
| | 기요양사업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장기요양 관련 전문가가 참석하는 사례관리회의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br>② 사례관리회의는 수급자의 욕구 조사,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 수립, 공단과 장기요양기관의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한다.<br>③ 사례관리회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전문성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br>④ 사례관리회의의 위원장은 제5항에서 임명 또는 위촉된 사람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br>⑤ 위원장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고,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각각 동수로 구성하여야 한다.<br>1. 시민단체 또는 노인단체를 대표하는 사람<br>2. 장기요양기관 또는 의료계를 대표하는 사람<br>3. 장기요양에 관한 학계 또는 연구계를 대표하는 사람<br>4. 장기요양요원을 대표하는 사람<br>⑥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례관리회의의 구성·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 <신 설> | 제54조의3(지역사례관리회의)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장기요양사업을 효 |

| | |
|---|---|
| | 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지역사례관리회의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br>② 지역사례관리회의는 그 관할 구역의 노인단체, 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요원을 대표하는 자 및 장기요양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br>③ 지역사례관리회의의 위원 수는 10명 이하의 범위에서 관할 구역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br>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례관리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공단에 장기요양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및 행정적 지원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br>⑤ 지역사례관리회의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 제60조(자료의 제출 등) ① 공단은 장기요양급여 제공내용 확인, 장기요양급여의 관리·평가 및 장기요양보험료 산정 등 장기요양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br>1.·2. (생 략)<br><신 설><br>② (생 략) | 제60조(자료의 제출 등) ① ----------.<br>1.·2. (현행과 같음)<br>3. 장기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사람 또는 수급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br>② (현행과 같음) |

※ 시행일: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적용례: 제32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

## 나. 검토의견

### 1)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단축

□ 2018년 12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으로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유효기간(6년) 및 지정갱신제[78]가 도입되었고, 개정법률이 2019년 12월 시행됨에 따라 유효기간 이후에도 지정을 유지하고자 하는 장기요양기관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180일 전부터 90일 전까지 갱신 신청을 하여야 함.

- 장기요양기관은 갱신 신청을 하면 ①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서비스 제공 능력(행정처분 이력,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 등), ②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사업운영계획, 수급자 인권보호, 직원교육 등), ③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회계·재정운영 준수 등), ④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근로계약, 급여 적정성 및 직원 복지), ⑤ 기타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기준으로 심사를 거치게 되고, 갱신심사 결과 부적격 기관은 갱신 부적격 내용을 수급자·보호자에게 통보함과 동시에 다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도록 조치하여야 함.

□ 한편, '2024년 장기요양기관(재가급여) 정기평가 결과보고서(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평가 결과 평균점수가 2020년 대비 3.5점 하락했고, 평가실시기관 9,035개소의 기관 중 D·E 등급이 각각 1,223개소(13.6%), 965개소(10.7%)에 이르러 개선이 필요한 장기요양기관들이 다수 존재하는 상황임.

---

78)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의3(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6년으로 한다.
제32조의4(장기요양기관 지정의 갱신)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제32조의3에 따른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그 지정을 유지하려는 경우에는 소재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정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까지 지정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 2024년 장기요양기관(재가급여) 정기평가 결과 >

<표3-2-1>급여종류별 평가점수 현황

(단위: 개소, 점)

| 구 분 | 실시기관수 | | 평균점수 | | | 최고점수 | | 최저점수 | |
|---|---|---|---|---|---|---|---|---|---|
| | 2020 | 2024 | 2020 | 2024 | 증감 | 2020 | 2024 | 2020 | 2024 |
| 계 | 5,891 | 9,035 | 84.6 | 81.1 | -3.5 | 103.0 | 99.8 | 29.3 | 26.0 |
| 방문요양 | 3,540 | 5,551 | 85.3 | 80.6 | -4.7 | 102.8 | 99.8 | 43.8 | 33.1 |
| 방문목욕 | 664 | 844 | 85.7 | 82.2 | -3.5 | 103.0 | 99.6 | 42.5 | 40.8 |
| 방문간호 | 131 | 177 | 88.3 | 86.0 | -2.3 | 100.0 | 99.8 | 57.6 | 45.9 |
| 주야간보호 | 1,053 | 1,852 | 84.2 | 83.2 | -1.0 | 102.5 | 98.6 | 29.3 | 27.9 |
| 단기보호 | 23 | 16 | 79.0 | 79.9 | 0.9 | 92.8 | 94.3 | 48.3 | 59.9 |
| 복지용구 | 480 | 595 | 77.9 | 76.6 | -1.3 | 101.0 | 98.0 | 33.8 | 26.0 |

<표3-2-2>2024년 급여종류별 평가등급 분포 현황

(단위: 개소, %, 점)

| 구 분 | 실시 기관수 | A | | | B | | | C | | | D | | | E | | |
|---|---|---|---|---|---|---|---|---|---|---|---|---|---|---|---|---|
| | | 기관 | 비율 | 점수 | 기관 | 비율 | 점수 | 기관 | 비율 | 점수 | 기관 | 비율 | 점수 | 기관 | 비율 | 점수 |
| 계 | 9,035 | 1973 | 21.8 | 93.4 | 2912 | 32.2 | 85.7 | 1,962 | 21.7 | 78.2 | 1223 | 13.6 | 70.7 | 965 | 10.7 | 61.4 |
| 방문요양 | 5551 | 1,154 | 20.7 | 93.4 | 1703 | 30.7 | 85.7 | 1,241 | 22.4 | 78.3 | 886 | 16.0 | 70.4 | 567 | 10.2 | 60.6 |
| 방문목욕 | 844 | 201 | 23.8 | 93.8 | 285 | 33.8 | 85.8 | 175 | 20.7 | 77.6 | 84 | 10.0 | 72.5 | 99 | 11.7 | 65.0 |
| 방문간호 | 177 | 62 | 35.0 | 94.5 | 61 | 34.5 | 86.0 | 27 | 15.3 | 80.5 | 16 | 9.0 | 74.0 | 11 | 6.2 | 68.3 |
| 주야간보호 | 1852 | 470 | 25.5 | 93.2 | 682 | 36.8 | 85.9 | 386 | 20.8 | 78.7 | 145 | 7.8 | 71.6 | 169 | 9.1 | 64.6 |
| 단기보호 | 16 | 2 | 12.4 | 93.2 | 6 | 37.5 | 85.0 | 4 | 25.0 | 76.1 | 1 | 6.3 | 66.9 | 3 | 18.8 | 70.2 |
| 복지용구 | 595 | 84 | 14.1 | 93.0 | 175 | 29.4 | 85.1 | 129 | 21.7 | 76.8 | 91 | 15.3 | 70.1 | 116 | 19.5 | 56.7 |

주 1) 점수구간 기관수 대비 급여종류별 기관수가 차지하는 비율

2) 급여종류별 기관수 대비 점수구간에 속한 기관수가 차지하는 비율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2024년 장기요양기관(재가급여) 정기평가 결과보고서, 2025.6.

□ 이에 안 제32조의3은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을 현행 6년에서 4년으로 단축함으로써 지정 갱신심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부실기관이 퇴출되도록 하고[79], 이를 통해 장기요양급여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취지로 이해됨.

79)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심사 시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반영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갱신 기준 등) ① 법 제32조의4에 따라 지정의 갱신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공단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제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3. 제38조제1항에 따른 해당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

□ 다만, 이는 다음과 같은 측면들을 고려할 때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첫째,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 제도는 해당 조문이 2019년 12월 시행되었고 그 유효기간이 6년임을 고려하면 동 제도는 사실상 2025년 12월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것으로[80], 제도의 운영 성과 등을 충분히 살펴보고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임.

□ 둘째, 당초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을 6년으로 규정한 것은 공단의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81]가 3년마다 이루어지는 것을 고려하여 두 차례의 정기평가를 거친 뒤 개선 가능성이 부족한 장기요양기관을 퇴출시키기 위한 취지로 보인다는 점[82]에서 장기요양기관 평가 주기와의 연계 측면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80) 개정 당시 부칙 제7조는 기 지정된 장기요양기관의 유효기간 기산을 개정법률 시행일부터 하도록 규정하였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부칙 <법률 제15881호, 2018. 12. 11.> 제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았거나 종전의 제32조에 따라 설치의 신고를 한 장기요양기관의 경우에는 제32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을 이 법 시행일부터 기산한다.

8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장기요양급여의 관리·평가) ②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이 제23조제5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기준·절차·방법 등에 따라 적정하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였는지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단의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내용의 평가 방법 및 평가 결과의 공표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8조(장기요양기관 평가 방법 등) ③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4조(평가의 절차 및 방법) 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별로 3년마다 정기평가를 실시한다. 다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는 등 정기평가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평가위원회가 심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11307호, 정춘숙의원 대표발의, 2018.1.8.) 검토보고서

### 2) 장기요양위원회 회의록 작성·공개

□ 현행법은 장기요양위원회의 회의록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현재는 보건복지부에서 장기요양위원회 회의 개최 후 주요 논의 결과를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공개하는 데 그치고 있음.

□ 안 제47조제3항은 장기요양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공개하도록 하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하여 회의록 작성·공개를 원칙으로 하려는 것임.

□ 이는 장기요양위원회의 투명성 제고라는 개정안의 취지와 회의록 공개에 따라 장기요양위원회 위원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제한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으로 보임.

- 참고로, 보험료율·급여비용 등을 심의하는 장기요양위원회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는 「국민건강보험법」[83]에 따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고용보험법」[84]에 따른 고용보험위원회 및

---

83) **「국민건강보험법」 제4조(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①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3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의결은 제외한다)
2. 제41조제3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기준
3. 제45조제3항 및 제46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사항
4. 제73조제1항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
5. 제73조제3항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과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5의2. 보험료 부과 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의결은 제외한다)
가. 건강보험 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의 소득 파악 실태에 관한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나. 가입자의 소득 파악 및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강화를 위한 개선 방안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보험료 부과와 관련된 제도 개선 사항으로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6. 그 밖에 건강보험에 관한 주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84) **「고용보험법」 제7조(고용보험위원회)** ① 이 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보험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의 시행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고용보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험제도 및 보험사업의 개선에 관한 사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85]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경우에는 회의록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없는 것으로 보이고, 「국민연금법」[86]에 따른 국민연금심의위원회는 같은 법 시행령에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도록 함과 동시에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및 수급자 등이 언제든지 회의록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87].

---

2.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른 보험료율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제11조의2에 따른 보험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제81조에 따른 기금운용 계획의 수립 및 기금의 운용 결과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보험제도 및 보험사업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8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 ①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조(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기능)**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범위나 비용 등 요양급여의 산정 기준에 관한 사항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4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98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의 운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산업안전·보건 업무와 관련되는 주요 정책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
5.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이하 "보험사업"이라 한다) 및 산업안전·보건 업무에 관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86) **「국민연금법」 제5조(국민연금심의위원회)** ① 국민연금사업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둔다.
1. 국민연금제도 및 재정 계산에 관한 사항
2. 급여에 관한 사항
3. 연금보험료에 관한 사항
4. 국민연금기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민연금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5조(국민연금심의위원회 회의록의 작성·비치 등)** ①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장소, 토의 내용 및 의결 사항을 적고, 위원장 및 출석한 위원이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및 수급권자나 그 밖에 국민연금의 이해관계인은 언제든지 회의록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87) 한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경우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공개하도록 하며, 원칙적으로 회의 개최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국민연금법」 제103조의2(운용위원회의 회의록)** ① 위원장은 회의의 일시·장소·토의내용·의결사항 및 각 참석자의 발언내용이 전부 기록된 회의록(이하 "회의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회의록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의 개최일부터 1년이 지난 후에 회의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운용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금융시장 안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안건의 경우에는 운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의 개최일부터 4년이 지난 후에 해당 안건의 회의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요구할 경우에는 회의록을 비공개로 제출하여야 한다.

### 3)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 활용

□ 공단은 현행법 제54조제2항[88]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급여내용을 평가하여 장기요양급여의 질 향상을 유도하고, 평가 결과를 공개하여 수급자의 알 권리 및 기관 선택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장기요양기관 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공단은 3년 주기 정기평가와 함께 수시평가(정기평가 결과 최하위기관, 휴업 등의 사유로 정기평가를 받지 못한 기관 대상)를 실시하고 있음.

- 공단은 평가 결과를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와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평가 결과 상위 기관 또는 지난 평가 대비 현저히 개선된 기관에 대해서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가산 지급[89]하며, 일부 지표가 미흡한 기관의 경우 세부내용을 관계 행정기관(관할 특별자치시·도 또는 시・군・구)에 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

□ 안 제37조제1항제9호는 평가 결과 최하위등급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고, 안 제54조제3항은 평가 결과 그 내용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앞서 살펴보았듯이 평가 결

88)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장기요양급여의 관리・평가) ②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이 제23조제5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기준・절차・방법 등에 따라 적정하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였는지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단의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89)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등) ③공단은 제54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장기요양급여평가 결과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가산 또는 감액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과가 미흡한 기관이 다수 존재하는 점을 감안하여 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함으로써 장기요양급여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취지로 이해됨.

□ 다만, 장기요양기관 단체들[90]은 평가 결과 최하위등급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는 안 제37조제1항 제9호와 관련하여 평가 결과는 이미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심사 시 활용되고 있다는 점, 현장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참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또한, 평가 결과에 따라 지정취소가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기관에서 급여를 제공받는 수급자에 대하여 미치는 영향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한편, 안 제54조제3항에서 "평가 결과" 그 내용에 따라 수사기관에 대한 고발 등을 하도록 하는 것과 관련하여, 평가지표를 살펴보면 2년 이상 근무한 직원의 수, 보수교육 이수자 수, 수급자에 대한 정기적 방문상담 실시 여부, 급여 제공 이후 수급자 등급의 유지·호전율 등으로, 평가 결과로서 위법사항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평가 과정에서" 위법사항 등을 적발하는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관계 기관에 통보하도록 하는 등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90)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 4) 사례관리회의 및 지역사례관리회의

□ 공단은 개별 수급자의 욕구 및 서비스 이용 목적을 파악하고 기관 등과 협의를 통하여 급여를 조정하며 건강보험 사업 연계, 지역사회 자원 연계 등을 수행하는 '사례회의'를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일부 수급자를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음.

- 사례회의에는 수급자(보호자), 장기요양기관, 지역사회 단체,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함.

□ 안 제54조의2는 사례관리회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가입자대표(시민단체·노인단체 대표), 공급자대표(장기요양기관·의료계 대표), 공익대표(학계·연구계 대표), 장기요양요원 대표가 10명 이내에서 동수로 공단 내에 위원회를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고, 동 위원회가 수급자의 욕구 조사,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 수립, 공단-장기요양기관 간 연계·협력을 심의·자문하도록 하며,

안 제54조의3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10명 이하의 범위에서 관할 구역의 노인단체, 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요원을 대표하는 자 및 장기요양 관련 전문가 등으로 지역사례관리회의를 구성·운영하도록 함.

□ 한편, 안 제17조제5항 및 제6항은 복합적인 장기요양 욕구를 가지고 있어 통합적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자, 도서·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자, 신체·정신·성격 등의 사유로 가족으로부터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자[91], 급여외

91) 안 제17조제5항 제2호의 도서·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와 같은 항 제3호의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가족 등으로부터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자는 현행법 제24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가족

행위 금지 의무 또는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괴롭힘 등의 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한 수급자 등에 대하여 사례관리회의와 지역사례관리회의의 의견을 들어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92]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함.

□ 즉, 개정안은 사례관리회의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개별 수급자에게 적합한 장기요양급여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기요양급여의 만족도를 제고하려는 취지로, 그 취지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 다만,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우선, 현재 공단이 운영하는 사례회의는 개별 수급자가 이용하는 장기요양기관, 그 수급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지역사회 단체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하여 운영되고 있는데, 그 수급자와 관련된 자들이 아닌 가입자대표, 공급자대표 등으로 구성되는 별도의 사례관리회의라는 협의체(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현재의 방식보다 개별 수급자에게 적합한 급여를 제공하기 위하여 적절한 방식인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아 가족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는 경우를 참고한 것으로 보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4조(가족요양비) ①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급자가 가족 등으로부터 제23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수급자에게 가족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도서·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가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3.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가족 등으로부터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자

92)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는 수급자의 심신 기능상태, 수급자와 그 가족의 욕구 및 선택, 수급자의 생활환경 및 자립적 일상생활 수행 등을 고려하여 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 본인부담율, 장기요양 필요영역·욕구·목표, 수급자 희망급여, 장기요양 이용계획(급여종류별 주·월당 이용횟수) 및 급여비용 등이 작성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7조(장기요양인정서) ③공단은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서를 송부하는 때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제28조에 따른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이를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 다음, 지역사례관리회의의 경우 그 역할 또는 심의·자문 사항 등을 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불명확한 측면이 있는데, 장기요양보험의 돌봄 측면을 고려하여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려는 취지라면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2026.3.27. 시행 예정)[93]에서 포괄적인 통합지원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도록 근거 규정을 두고 있어 이와 중복되는 측면이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다. 관계부처 및 관련기관 의견

□ 보건복지부

- (안 제4조제8항 관련) 장기요양의 공공성, 전문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가 및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 필요성에 공감함.

- (안 제17조제5항 관련) 취약 수급자에 대한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작성 시, 사례관리회의 의견 청취 절차를 추가할 경우 신속한 서비스 제공 지연 등이 우려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안 제32조의3 관련) '25년 12월부터 최초로 지정 유효기간(6년)이 도래함에 따라 '25년 9월부터 지정 갱신심사가 시작되었으며,

93)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통합지원협의체)**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 내에서 통합지원의 원활한 추진과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통합지원협의체를 둔다. 이 경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합지원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자문한다.
1. 지역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향후 6년간 모든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지정 갱신여부를 1회 심사하게 됨. 제도의 최초 도입에 따른 시행을 거치지 않고 유효기간을 4년으로 변경하는 것은 현장에 심각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며, 이미 6년의 유효기간에 따라 갱신심사를 받은 기관에 대한 차별취급 문제가 발생함. 따라서 지정갱신 제도 시행 이후 성과분석을 통해 제도개선 여부 검토가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장기요양기관협회, 지자체, 건보공단 등 다양한 관계자 의견 수렴을 통해 유효기간 변경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안 제37조 관련) 평가 결과 3회 이상 최하위등급 시 지정취소하도록 하는 것은 장기요양기관 평가와 지정취소는 목적을 달리하며, 타 지정취소 사례와 비교하면 과도한 행정처분으로 사료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또한,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에서 최근 6년간 장기요양기관평가 결과(2회)를 반영하여 심사하며, 최하위등급 시 심층심사군으로서 갱신 부적격이 가능함.

- (안 제47조제3항 관련) 장기요양위원회 회의록 공개는 위원들의 심도있는 의견 개진 및 토론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할 필요가 있으며, 위원회 운영 투명성 제고를 위해 위원회 주요 논의 결과를 회의 종료 즉시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공개 중인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 (안 제48조제2항 관련) 건보공단 업무에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안전 관련 업무 추가 필요성에 공감하며, 신규로 추가되는 건보공단 업무의 명확화를 위해 조문 정비가 필요함. 다만, 제7호 중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안전조치는 동법 제35조의4[94]에 따라 시설

9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4(장기요양요원의 보호)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이 다

장의 의무이고, 공단은 장기요양 수급자에 대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관리운영기관으로, 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를 공단에 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또한, 제14호(공공 장기요양기관 운영 표준 수립·보급 및 지원)와 관련하여, 공단에서는 각 급여종별로 '급여제공 매뉴얼'을 제작·배포하여 기관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국공립형 장기요양기관의 지역별·규모별 현황에 따라 적합한 운영기준에 차이가 존재하므로 운영 표준 수립 여부는 연구 등을 통한 중장기 검토가 필요함. 한편, 제15호(사례관리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의 경우 수급자 상태에 맞는 급여 제공 여부 등의 판단을 위해서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주도의 사례관리가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되므로, 공단의 사례관리회의 설치·운영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이와 관련한 업무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안 제54조제3항 관련) 평가는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하고 그에 따른 수급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위해 실시하고, 기관의 위법성 처분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음. 또한, 평가지표에 법률 위반과 관련된 평가항목은 없어 평가결과

---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인한 고충의 해소를 요청하는 경우 업무의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수급자 및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폭언·폭행·상해 또는 성희롱·성폭력 행위를 하는 경우
2. 수급자 및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제28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급여외행위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에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장기요양요원에게 제28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급여외행위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2.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할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③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요양 수급자와 그 가족에게 장기요양요원의 업무범위, 직무상 권리와 의무 등 권익보호를 위한 사항을 안내할 수 있다.
④ 장기요양요원은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요원의 고충에 대한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한 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장기요양기관의 장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받은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시정신청의 절차, 사실확인 조사 및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로서 고발조치는 불가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한편, 평가 과정 중 확인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평가와는 별개로 조치할 수 있는 만큼 이를 활용할 필요가 있고, 장기요양기관의 거짓, 부정행위 등이 있을 경우 누구나 신고가능하도록 공단 지침으로 규정함.

- (안 제54조의2 및 제54조의3) 수급자 상태에 맞는 개별 기능상태, 욕구 및 특성, 지지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공단 주도의 사례회의 등이 이미 운영 중이므로 추가적인 사례관리회의 설치·운영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수급자 상태에 맞는 급여 제공 여부 등의 판단을 위해서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주도의 사례관리가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됨. 또한, '26년 3월 통합돌봄 시행 후 지자체 주관으로 수급자 대상 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회의체를 구성할 예정으로, 별도 회의체를 구성하는 것은 기능 중복이 우려됨.

- (안 제60조 관련) 장기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사람 및 수급자 관할 지자체에 대한 자료 요구 근거 신설 필요성은 높지 않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국민건강보험공단

- (안 제17조제5항 관련) 지역사례관리회의를 활용하여 수급자에게 보다 효율적으로 적절한 급여를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는 수급자의 기능상태, 욕구 및 특성,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되는 것으로, 인정조사 및 이용지원 상담과정에서 확인된 사항이 반영되

고 있음. 또한, 공단은 현행법 제17조제1항에 따를 때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인정 심의를 완료하면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지체없이 수급자에게 보내야 하므로 개정안을 반영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안 제32조의3 관련) 법 제32조의3은 지정 유효기간 6년의 제도의 안착을 전제로 설계되고 2019년 12월 시행되었음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는 2025년 12월부터 시행되어 이제 막 정착되고 있는 단계임. 현 시점에서 지정 유효기간을 6년에서 4년으로 조정할 경우 복지부와 지자체, 공단의 행정 혼선은 물론 장기요양기관 현장에도 상당한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이에 현행 6년의 지정 유효기간을 일정기간 유지한 후 제도의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유효기간의 변경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방향이 적절함.

- (안 제37조제1항제9호 관련)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 시, 심사기준으로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를 기 반영하고 있어 해당 개정조항이 적용될 경우 이중적 제재로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으므로 사회적 논의를 통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함.

- (안 제48조 관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95]에 따를 때, 장기요양기관의 안전점검 및 지도감독 권한(행정처분 권한 포함)은 장기요양기관 설치, 운영 및 지정을 담당하는 지자체에 있고, 2025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Ⅱ)([6]시설 안전관리지침 p245)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시설)은 안전관리책임관을 지정하여 지

9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 ①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가급여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

자체에 보고하고 지자체는 지정 현황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장기요양기관의 관리·운영 주체가 아닌 공단이 안전조치 사항을 관장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사료됨.

- (안 제54조제3항 관련) 장기요양급여의 관리·평가는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실시하고 있으며 급여종류별 평가지표의 평가기준에 대한 충족 여부를 판단함. 공단은 평가 결과를 기관에 통보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그 결과를 공개하고 있으며, 노인인권보호 등 일부지표에 대한 평가결과가 미흡일 경우 세부내용을 관계 행정기관(관할 특별자치시·도, 시군구)에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고 있음. 따라서, 평가 결과 그 내용을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조치는 장기요양기관의 급여내용 적정성을 평가하여 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하는 평가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

- (안 제54조의2 관련) 회의체를 구성하여 주기적인 회의를 통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 수립, 공단과 기관의 연계·협력에 관한 심의 등은 수급자에게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고, 회의체 운영은 전문 인력과 재정적 자원이 충분히 뒷받침이 필요하며, 수급자 수를 고려할 때 회의 참석 및 관련 비용 지출은 보험재정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음.

□ 충청남도

- (안 제32조의3 관련)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유효기간을 4년으로 할 경우 기관의 부담이 가중되어 안정적인 운영 및 지속적인 돌

봄 서비스 제공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잦은 지정·취소는 지자체에게도 행정부담으로 작용하며, 기관의 책임성과 이용자의 신뢰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 (안 제32조의3 관련) 장기요양기관은 대상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연구하고 노력해야 하나 3년마다 평가를 받고 있어 서비스 제공시간을 줄여 많은 시간과 노력을 평가 준비에 사용하는데, 이에 더해 지정갱신을 6년에서 4년마다 하는 것은 기관 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함은 물론 시설 운영의 불안정성이 높아져 서비스 질 저하 초래 및 지방자치단체 행정력과 비용 낭비를 초래할 수 있어 반대함.

- (안 제37조제1항제9호 관련) 공단의 평가 결과 최하위등급 3회 이상일 때 지정취소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평가 절차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제재적 기능을 신설하는 것이므로 반대함.

- (안 제48조 관련)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안전조치, 장기요양기관 운영 지원, 사례관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공단이 관리하도록 하는 것은 필요함. 그러나 장기요양 수가를 이용하여 운영하는 모든 장기요양기관 운영을 지원하는 것이 아닌 공공장기요양기관만의 운영을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므로 반대함.

- (안 제54조제3항 관련) 공단의 평가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을 근거로 수사의뢰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평가 절차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제재적 기능을 신설하는 것이므로 반대함.

□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 개정안에 반대함.

□ 한국노인복지중앙회

- (안 제32조의3 관련) 지정갱신제 도입 당시('19.12.12. 시행)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 주기(3년)를 고려하여 유효기간을 6년으로 정하였으나, 2025년 지정갱신제 첫 시행 후 그 결과 및 실효성에 대한 통계 검토 및 논의 없이 단축하는 것은 모순이므로 반대함.

- (안 제37조제1항제9호 관련) 장기요양기관은 6년마다 재지정 심사 시 이미 평가결과를 반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정 취소 또는 업무정지 기준에 평가 결과 3회(9년)를 도입하는 것은 불필요한 중복 규제이므로 반대함.

□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 (안 제32조의3 관련)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질 개선 및 투명한 운영을 위한 취지로 유효기간을 줄이는 것은 실익이 없고, 3년 단위로 시설등급평가를 받는데 4년 단위 지정갱신은 기관별 심사 공정성에도 부합하지 않음. 따라서 지정 유효기간을 6년으로 유지하되 페널티 방안을 보다 합리적으로 강구하고, 지정갱신 방식을 지자체에서 엄격히 하는 것이 나을 수 있으므로 반대함.

- (안 제37조제1항제9호 관련) 현장에서 여러 상황이 충분이 있을 수 있음에도 평가결과 최하위 등급 연속 3회가 아닌 단순 3회로 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 처분은 매우 과도한 제재로 삭제가 필요함.

□ 대한의사협회

- (안 제54조제3항 관련) 개정안에 따라 평가결과를 토대로 바로 수사기관 고발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필요 이상의 과잉 입법이며 공단이 자칫 고발권을 남발할 경우 장기요양기관들의 서비스가 위축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는 케어가 필요한 노인들에게 돌아갈 것임. 따라서 수사고발 등의 강압적 수단보다는 먼저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등의 낮은 단계의 규율책을 먼저 고려하는 것이 필요함.

- (안 제54조의2 관련) 사례관리회의를 구성운영토록 규정하고 위원 구성에서 “장기요양기관 또는 의료계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명시하고 있는바, 규정에 따르면 자칫 장기요양기관을 대표하는 사람만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의료계를 대표하는 사람은 위원구성에서 배제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에 장기요양기관을 대표하는 사람과 의료계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명확히 구분하는 방향으로의 위원구성 개선이 필요함.

| 문 의 처 |
| --- |
| 02)6788-5503 |